

臺灣·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II)



統一院

1992

- 우리 원에서는 南北交流協力の 本格化過程에서 제기 될 法的 問題點 및 그 事前對策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3월 「臺灣·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 본 자료는 1992년 6월 臺灣 行政院 大陸委員會가 발행한 「大陸工作法規彙編」의 내용중 우리 원이 앞서 발행한 「臺灣·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에 포함되지 않은 1991년 6월 이후의 臺灣 立法院 通過·修正法律을 翻譯, 收錄한 것입니다.

- 翻譯 및 編輯過程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誤謬가 발생했으리라 생각되나, 利用者 여러분의 넓은 理解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有用한 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기대합니다.

臺灣入國을申請하는때의作業要點	69
8. 現段階外蒙古人士의臺灣訪問申請作業要點	72
9. 홍콩·마카오地區居住住民의臺灣長期居留補充規定	75
IV. 文教規定	77
1.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教活動從事作業要點	79
2.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教活動從事作業規定	82
3.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化活動從事作業規定	86
4. 公務員의大陸地區文教活動從事注意事項	90
5. 機關(構)·宗教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宗教活動從事作業規定	93
6. 現段階大陸專門人士·海外學者·留學生의臺灣參觀 訪問申請準則	97
7. 現段階在外大陸科學技術人士를臺灣에招聘하여 科學技術研究發展作業에參與시키는作業規定	104
8.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프로그램 取材·撮影·製作申請作業要點	108
9.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프로그램 取材·撮影·製作申請準則	111
10. 大陸地區各主要大衆媒體事業體所屬關聯專門人士의	

臺灣參觀訪問申請準則	116
11. 大陸地區의優秀한民族藝術및民俗技藝人士를招聘하여 臺灣에서傳授하는作業要點	122
12. 大陸地區文化財의臺灣地區展覽申請作業要點	126
V. 財經規定	131
1. 現段階金融機構의大陸地區間接送金處理 作業要點	133
2. 指定銀行의臺灣地區企業에對한大陸地區輸出保證金 處理作業要點	135
3. 大陸地區의間接投資또는技術合作에對한指導 作業要點	137
VI. 交通規定	143
1. 臺灣地區海外漁業基地에서의漁船船主의大陸船員 雇傭操業管理規定	145
2. 旅行業에있어臺灣地區住民의大陸地區旅行處理 作業要點	149
VII. 附 錄	153
1. 行政院各機關의國家統一綱領短期段階計劃實行 摘要表	155
2. 海峽兩岸關係協會(大陸側機構)關聯資料	161

臺灣入國을申請하는때의作業要點	69
8. 現段階外蒙古人士의臺灣訪問申請作業要點	72
9. 홍콩·마카오地區居住住民의臺灣長期居留補充規定	75
IV. 文教規定	77
1.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教活動從事作業要點	79
2.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教活動從事作業規定	82
3.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文化活動從事作業規定	86
4. 公務員의大陸地區文教活動從事注意事項	90
5. 機關(構)·宗教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大陸地區 宗教活動從事作業規定	93
6. 現段階大陸專門人士·海外學者·留學生의臺灣參觀 訪問申請準則	97
7. 現段階在外大陸科學技術人士를臺灣에招聘하여 科學技術研究發展作業에參與시키는作業規定	104
8.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프로그램 取材·攝影·製作申請作業要點	108
9.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프로그램 取材·攝影·製作申請準則	111
10. 大陸地區各主要大衆媒體事業體所屬關聯專門人士의	

臺灣參觀訪問申請準則	116
11. 大陸地區의優秀한民族藝術및民俗技藝人士를招聘하여 臺灣에서傳授하는作業要點	122
12. 大陸地區文化財의臺灣地區展覽申請作業要點	126
V. 財經規定	131
1. 現段階金融機構의大陸地區間接送金處理 作業要點	133
2. 指定銀行의臺灣地區企業에對한大陸地區輸出保證金 處理作業要點	135
3. 大陸地區의間接投資또는技術合作에對한指導 作業要點	137
VI. 交通規定	143
1. 臺灣地區海外漁業基地에서의漁船船主의大陸船員 雇傭操業管理規定	145
2. 旅行業에있어臺灣地區住民의大陸地區旅行處理 作業要點	149
VII. 附 錄	153
1. 行政院各機關의國家統一綱領短期段階計劃實行 摘要表	155
2. 海峽兩岸關係協會(大陸側機構)關聯資料	161

I. 基本法規

臺灣地區와大陸地區住民關係條例

○1992年 7月 31日 總統華總(壹)義字
第3736號令 公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國家통일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 2 條 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지구라 함은 臺灣·澎湖·金門·馬祖 및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기타지구를 가리킨다.
2. 대륙지구라 함은 대만지구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를 가리킨다.
3. 대만지구주민이라 함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을 가리킨다.
4. 대륙지구주민이라 함은 대륙지구에 호적이 있거나,

대만지구주민으로서 대륙지구에 가서 4년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가리킨다.

第3條 본 조례의 대륙지구주민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 거주하는 대륙지구주민에게도 적용한다.

第4條 ①행정원은 기구를 설립 또는 지정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앞에서 언급한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의 감독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③앞의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④공무원이 앞의 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전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공직복귀시 공무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이미 전임한 경우도 같다.

第5條 ①앞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지정된 기구 또는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어떠한 형식의 합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 항의 합의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第6條 ①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원은 대등원칙(對等原則)에 의거하여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대만 지구에 그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전 항의 설립허가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第7條 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문서는 행정원이 설립·지정한 기관이나 同院이 위탁한 민간단체의 검증을 거쳐야 진본(眞本)으로 추정한다.

第8條 대륙지구에 사법적인 문서를 송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해야 할 때는 사법기관은 반드시 제4조의 기구나 민간단체에 촉탁 또는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第2章 行 政

第9條 ①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들어갈 때에는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대만지구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들어간 때에는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 항의 허가에 관한 명령은 內政部(내무부)가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第10條 ①대륙지구주민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대만지구에 들어올 수 없다.

②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주민은 허가목적

에 무함되지 않는 팔농이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앞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이를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공포한다.

第11條 ①대륙지구주민의 고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 합리적인 근로조건으로 대만지구에서 모집하여야 하며,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의 고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고용주와 그 업무를 변경할 수 없다.

③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할 때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정기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第12條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은 그 가족이 근로보험법의 시행지구이외에서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거나 출산 또는 사망한 때 이 사고에 대한 보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第13條 ①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하는 자는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개설한 특별구좌에 취업안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수수료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14條 ①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이 이 조례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주 관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 항의 허가가 취소된 대륙지구주민은 기한내에 출국 하여야 하며 기한이 넘어서도 출국하지 않은 때에는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출국시킨다.

③위의 규정은 근로계약이 중지 또는 만료된 때에도 적용한다.

第15條 아래의 행위는 이를 행할 수 없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대만지구에 들어오게 하는 행위
2. 대만지구주민을 초청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대륙지구 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3. 대륙지구주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전 항의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소개하 는 행위

第16條 ①대륙지구주민중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 는 자는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주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70세이상, 12세이하인 자
2. 1945년 이후 병역관계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臺灣省籍 군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후에 작전 또는 특수임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포로가 된 前국민당군장병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4.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전에 국비로 대륙지구에 파견되어 유학하던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전에 대륙지구에 간 대만원적을 갖고 있고 대만지구에 진계친족·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있는 자
6. 1987년 11월 1일전에 선박고장, 조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지구에 원적이 있는 어민 또는 선원

②대륙지구주민이 앞의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에는 제한이 있다.

③앞의 제5항 및 6항에 언급된 대륙지구주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대만지구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第17條 ①대륙지구주민중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만지구에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주민의 배우자로 결혼한 지 만2년이 경과하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자

2. 기타 정치·경제·사회·교육·과학기술 또는 문화적 고려에 기초하여 주관기관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②앞의 제1항의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배우자가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중혼(重婚)한 자는 신청전에 반드시 나중에 혼인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③대륙지구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대만 지구에 신청하는 거류종류 및 인원수는 제한이 있다. 그 거류종류 및 인원수는 행정원이 입법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공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류신청을 하는 자는 대만 지구에서 연속해서 만2년을 거류한 후 정착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류허가를 받거나 제4항에 의해 정착허가를 받은 대륙지구주민에 있어 그 결혼이 모의에 의한 허위결혼임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류허가 또는 호적등기를 취소하고 강제출국 시킨다.

⑥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 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없이 들어온 경우에 있어 대만지구에서의 체류기간에는 제1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6조 및 제1항의 정착 또는 거류신청의 허가에 관

한 명령은 內政部(내무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第18條 ①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치안기관은 사법절차의 개시 또는 종결에 관계없이 그 강제출국을 집행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온 자
2. 허가를 받고 들어왔으나 이미 체류기간을 넘긴 자
3.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 또는 일에 종사하는 자
4. 범죄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5. 국가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②전 항의 대륙지구주민을 강제출국전에 잠시 수용할 수 있다.

③앞의 규정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에게 적용한다.

第19條 ①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주민의 입국을 보증하는 대만지구주민은 피보증인이 기한을 초과해서도 출국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기관의 강제출국조치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강제출국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비용은 강제출국을 집행하는 기관이 영수증사

본과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증인에게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로 집행한다.

第20條 ①대만지구주민으로 다음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강제출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들어오게 한 자
2.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고용한 자
3. 제14조 ②항 또는 ③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출국하는 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한 자

②전 항의 비용은 강제출국 집행기관이 영수증사본과 계산서를 첨부하여 부담자에게 기한내에 납부토록 통지하며 기한이 초과되어서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第21條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개설한 지 만10년이 되지 아니하고는 공직의 선거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군인·공무원·교원 또는 공영사업기관(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을 조직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22條 대만지구주민과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정착하고 있는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받은 교육의 학력 검증 및 인정에 관한 방법은 교육부가 제정하고 행정원

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23條 대만지구·대륙지구 및 기타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대륙지구의 교육기구를 위하여 대만지구에서 학생을 모집·알선 또는 소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第24條 ①대륙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대만지구의 소득원과 동일하게 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륙지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전 항의 공제액은 대륙지구의 소득을 가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25條 대만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그 납세액을 소득원에 따라 공제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며, 공제납세의무인은 급여에 있어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납부하며, 그 결산신고를 면제한다.

第26條 ①각종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퇴직군인·공무원·교원 및 공영기관의 직원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로 가거나 대륙지구로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퇴직연한규정과 같은 직급 현직자의 월 보수액에 의하여 그 퇴직금을 일시불로 계산하되,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잔여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잔여

액이 없거나 잔여액이 그 일시불지급의 반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그 일시불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②전 항의 사람이 대만지구에 부양하여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는 신청전에 그 피부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27條 ①행정원국군퇴역군인지도위원회(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가 생활을 보조하는 영민(榮民:대륙에서 온 국민당군 퇴역군인:역자주)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정착하는 경우에 그 부양금을 원래대로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지급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국군퇴역군인지도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28條 ①중화민국의 선박·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륙지구를 항행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교통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第29條 ①대륙지구의 선박·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없이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 및 대북비행정보제한구역등에 들어올 수 없다.

② 전 항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 및 제한구역은 국방부가 이를 공고한다.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교통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0條 ① 외국의 선박·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간의 항구·공항을 직접 운항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의 선박·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를 이용하여 대륙지구의 항구·공항을 포함하는 제3지구를 거치는 정기노선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선박·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가 대륙지구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임대·투자 또는 경영하는 것인 경우에 교통부는 대만지구의 항구·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금지규정은 교통부가 필요시에 행정원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第31條 대륙지구의 민간항공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북비행정보구역의 진입제한구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한구역을 벗어나라는 경고 또는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32條 ① 대륙지구의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에 들어온 때는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축출하거나 또는 그 선박·물품을 압류하고 그 인원을 억류하거나 또는 필요한 방위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압류한 선박·물품 또는 억류한 인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3개월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선박, 물품의 몰수 또는 반송
2. 억류한 인원을 조사한 후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 또는 강제출국

③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압류한 대륙지구의 선박·물품 및 억류인원은 주관기관이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따른다.

第33條 ①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없이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공동으로 법인·단체·기타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결성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관련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③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구성원 또는 직무를 맡고 있거나 이미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공동으로

법인·단체·기타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결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내에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第34條 ①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대만지구에서 대륙지구의 물품·노무 또는 기타사항에 대한 수입·제작·발간·대리·상영·게재 또는 기타 판촉확대활동을 위탁·수탁하거나 스스로 행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방법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第35條 ①대만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없이 대륙지구에서 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명령은 주관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③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제1항의 투자·기술합작·무역 또는 기타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36條 ①대만지구의 금융보험기구 및 대만지구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에 설립한 분점·지사 등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없이 대륙지구의 법인·단체·기타기구 또는 대륙지구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에 설립된 그 분점·지사 등 기구와 업무상의 직접거래를 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財政部(재무부)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7條 ①대륙지구의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허가없이 대만지구에 반입하거나 대만지구에서 발간·제작 혹은 상영을 할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신문국(대만의 정부대변기구:역자주)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8條 ①대륙지구에서 발행되는 화폐는 대만지구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반입시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필요시에 방법을 제정하여 대륙지구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대만지구 반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신문국이 제정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9條 ①대륙지구의 중국문화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반입되어 공개진열·전람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전 항이외의 대륙지구의 문물·예술품이 법령에 위반되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에서의 공개진열·전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第40條 대만지구에 수입 또는 휴대하여 반입된 대륙지구 물품은 수입으로 보며, 그 검사·점역·관리·관세 등 세금의 징수 및 처리 등은 물품반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第 3 章 民 事

第41條 ①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의 민사사건은 이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대륙지구주민 상호간 및 외국인간의 민사사건은 본 조례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위지·계약지·발생지·이행지·소재지·소송지 또는 중재지는 대만지구 또는 대륙지구를 말한다.

第42條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들 지구내의 각 지방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호적지 규정에 따른다.

第43條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륙지구에 이 법률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 규정에 의해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44條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규정이 대만지구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45條 민사법률관계의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로 한다.

第46條 ①대륙지구주민의 행위능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이미 결혼한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47條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당해행위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행위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방식도 역시 유효하다.

②물권의 법률행위방식은 그 物의 소재지 규정에 따른다.

③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또는 보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의 규정에 따른다.

第48條 ①채무계약은 계약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 항의 계약지가 불명하며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의 규정에 의한다. 이행지가 불명한 때에는 소송지 또는 중재지의 규정에 따른다.

第49條 대륙지구에서 관리소홀·부당이익 또는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륙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50條 권리침해행위는 손해발생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만지구의 법률이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1條 ①물권은 物의 소재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권리를 목표로 하는 물권은 권리성립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物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의 그 물권의 득실은 그 원인이 성립된 소재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선박의 물권은 선적등록지의 규정에 따른다. 항공기의 물권은 항공기등록지 규정에 따른다.

第52條 ①결혼 또는 합의이혼의 방식 및 기타 요건은 행위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혼판결의 사유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第53條 부부의 한 쪽이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한 쪽이 대륙지구주민인 경우의 그 결혼 또는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第54條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결혼한 경우, 그 부부의 재산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대만지구의 재산은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55條 ①결혼하지 아니하고 출산한 자녀의 확인인수 성립요건은 각 당해 확인인수자와 피확인인수자가 확인인수를 할 때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②확인인수의 효력은 확인인수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第56條 ①입양의 성립 및 종결은 각 당해입양자와 피입양자가 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②입양의 효력은 입양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第57條 부모의 한 쪽은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한 쪽은 대륙지구주민인 경우에 그 자녀간의 법률관계는 부친의 적이 있는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부친이 없거나 계부인 경우는 모친이 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58條 피보호자가 대륙지구주민일 때에 보호는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피보호자의 거처가 대만지

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第59條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60條 대륙지구주민이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유산에 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1條 대륙지구주민의 유언에 대한 성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언으로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2條 대륙지구주민에 의한 기부행위의 성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부재산이 대만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3條 ①본 조례 시행전에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대륙지구주민상호간 및 외국인간에 대륙지구에서 성립된 민사법률관계 및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부담하는 의무는 대만지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②전 항의 규정은 본 조례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국가통일전에 다음의 채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1. 1949년 이전에 본토에서 발행된 미상환외화채권 및 1949년의 황금단기공채
2. 국가은행국 및 예금을 예치한 금융기구가 본토에서 철수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각종의 채무

第64條 ①부부중 한 쪽이 대만지구에, 다른 한 쪽이 대륙지구에 있음으로 인해 동거가 불가능하여 한 쪽이 1985년 6월 4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985년 6월 5일 이후,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나중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전 항의 경우에 부부 쌍방이 모두 재혼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혼한 자의 재혼일로부터 원래의 혼인관계는 소멸된다.

第65條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주민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79조 제5항의 규정외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자녀 또는 양자녀가 있는 자
2. 동시에 2인이상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자
3.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입양한 사실이 있는 자

第66條 ①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주민의 유산을 상속하

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상속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된 경우에는 앞 항의 기간을 본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第67條 ①피상속인의 대만지구유산을 대륙지구주민이 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그 소득재산총액이 대만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부분은 대만지구의 동일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대만지구에 동일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만지구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②전 항의 유산이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거 전용구좌에 예치하여 잠시 보관하는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유언자가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에 증여하는 경우 그 총액은 대만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①항의 유산중 대만지구상속인이 거주하며 떠나지 않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대륙지구상속인은 이를 상속

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유산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대륙지구주민이 규정에 의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표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 권리를 반드시 가격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第68條 ①현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유무가 불명 또는 상속인이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그 유산을 관리한다.

②전 항의 유산을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관기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따른다.

③제1항의 유산관리에 관한 명령은 국방부와 행정원국군퇴역군인지도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69條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부동산물권을 설정하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법 제17조에 열거한 각 토지를 임차할 수 없다.

第70條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대만지구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第71條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그 명의로 대만지구에서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인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해 대륙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第72條 ①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만지구의 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어떠한 직무도 맡을 수 없다.

②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관련주관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73條 ①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총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외국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74條 ①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민사확정재판·민사중재재판의 문서가 대만지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 항의 법원재정인가를 거친 재판 또는 판단은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집행의 명의로 삼을 수 있다.

第 4 章 刑 事

第75條 대륙지구 또는 대륙선박·항공기내의 범죄는 대륙지구에서 처벌을 받았다 할 지라도 여전히 의법처리한

다. 그러나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第76條 배우자의 한 쪽이 대만지구에 있고 다른 한 쪽은 대륙지구에 있어,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재혼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한 경우는 소추·처벌을 면제한다. 그 상대자 또는 동거인도 같다.

第77條 대만지구이외의 지구에서 내란죄, 외환(外患)죄를 범한 대륙지구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오는 경우, 입국신청시에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추·처벌을 면제한다. 대만지구에 들어와 주관기관이 개최를 허가한 회의 또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나 특별전문허가로 신고를 면제한 경우도 또한 같다.

第78條 대륙지구주민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가 대만지구에서 침해받는 경우에 그 고소 또는 호소의 권리는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소송 권리에 한한다.

第 5 章 罰 則

第79條 ①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또한 대만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②전 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第80條 ①중화민국의 선박·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구의 소유인·운영인 혹은 선장·기타운송기구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륙지구를 항행한 경우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10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단, 선장·기장 또는 기타 운송기구의 운전자가 스스로 대륙지구로의 항행을 결정한 경우는 선장·기장 또는 운전자를 처벌한다.

②전 항의 대륙지구를 항행한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기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 전 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해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제1항의 상황에 대해 주관기관은 그 선박·항공기 또는 운송기구를 일정기간 운항정지 또는 등록취소·말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선장·기장 또는 운전자의 영업허가 또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第81條 ①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왕래한 경우는 그 참여결정인을 3년이하의 유기징역·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100만원이상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참여결정인의 처벌외에 당해 금융보험기구에 대해서도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③제1,2항의 규정은 중화민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82條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모집·알선 또는 소개행위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第83條 ①제15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유기징역·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6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③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이 업무수행상 전 이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처벌외에 당해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전 이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법인의 대표 또는 자연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해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第84條 ①제15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6개월이하

의 유기징역·구류에 처하거나 대만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기타종업원이 업무수행상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의 처벌이외에 당해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전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법인의 대표 또는 자연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5條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30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당해선박·민간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구의 소유자·운영자에 소속된 선박·민간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대만지구의 항구·공항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第86條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기술합작·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대만화 30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일정기간 그 투자·기술합작·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해서도 정지하지 않는 경우는 연속해서 처벌한다.

第87條 제15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88條 ①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전 항의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누구의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第89條 ①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전 항의 광고는 누구의 소유 또는 보유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第90條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91條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만원 이상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92條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화폐는 세관이 이를 몰수한다.

第93條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발효된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 또는 예술품을 주관기관이 몰수한다.

第94條 본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는 주관기관이 부과한다. 납부통지를 받고서도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第 6 章 附 則

第95條 主管기관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직접통상·통항 및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취업의 실시에 앞서 반드시 입법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법원이 회기중 1개월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第96條 本 조례의 시행세칙 및 시행일시는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II. 組織規定

行政院大陸委員會의顧問招聘方法

○民國81年(1992年)1月24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法字 第0311號令에 의
해 全文 6個條의 條文 公布

第1條 본 방법은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조직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제정한다.

第2條 본회는 5인에서 7인의 고문을 두며, 주임위원이 대륙문제연구기관(기구)나 양 지구의 중개사무 또는 본회의 업무에 필요한 학자·전문가로서 담임케 한다. 임기는 1년이며, 기간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

第3條 고문은 본회의 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第4條 고문은 대륙사무 및 본회의 업무사항에 대해 의견제공을 한다.

第5條 고문은 무보수직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第6條 이 방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行政院大陸委員會會議規則

○民國81年(1992年)3月18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1)陸秘字 第1041號令에 의 해 全文 14條의 條文 公布

第1條 본 규칙은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본 회로 약칭 한다) 조직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第2條 본 회의 위원회의(이하 위원회의로 약칭한다)는 주임위원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사정에 의하여 주임위원이 소집하지 못하는 때에는 주임위원은 부주임위원 1인을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게 한다.

第3條 위원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第4條 위원회의의 토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륙정책사업계획 또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제
2. 대륙사업법규의 제정(수정)에 관한 심의사항
3. 다른 부서의 대륙사업과 관련된 협조와 연계사항
4. 기타 대륙사업과 관련된 사항

第5條 위원회의의 토론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에 따른다.

第6條 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第7條 위원회의의 의사진행순서는 반드시 아래의 순서에 의거하여 배열하며 비밀과 보통부분으로 나눈다.

1. 보고사항
2. 토론사항

第8條 위원회의의 의안은 주임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정으로 채택한다. 특수한 문제나 시간성 사항은 주임위원의 심사를 거쳐 의정에 편입(혹은 임시의안)된다. 만약 긴급한 사건에 봉착하는 때에는 회의시 의장의 허가를 거쳐 임시동의를 제출한다.

第9條 위원회의의 기록은 비밀과 보통부분으로 나누고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차수
2. 회의시간
3. 회의장소
4. 의장·출석 및 방청인원 성명
5. 기록자 성명
6. 보고사항의 개요 및 결정
7. 토론사항의 개요 및 결정
8. 기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

전 항의 회의기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원이 선독(宣讀)한 후 의장에게

개정을 제청한다.

第10條 위원회의의 의정 및 기록된 비밀부분은 본 회의 비서처에서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단, 회의참가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극비사항과 절대비밀사항 이외에는 검토한 후 참고열람할 수 있으며 신중하고 주의깊게 보관해야 한다.

第11條 위원회의 참석인원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고문·주임비서 및 각 處·室의 주관
2. 기타 주임위원의 지정 또는 요청을 경과한 인원

第12條 위원회의의 참가인원 및 기록인원은 회의의 내용에 대해 공무원근무법 제4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대외적으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대외적인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와 지정기관이 동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第13條 위원회의의 의정에 대한 편제·개회시의 기록 및 기타 관련사항은 본 회의 비서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第14條 본 회의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行政院大陸委員會의 홍콩·마카오會報 設置要點

○民國80年(1991年)10月9日 行政院長
制定

1. 행정원 대륙위원회(이하 대륙위원회라 약칭한다)는 각 部·會 등 관련기관의 홍콩·마카오에 있어서의 협조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원 대륙위원회 조직조례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홍콩·마카오회보(이하 본 회보라 약칭한다)를 설치한다.
2. 본 회보는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이 소집인이 되고 각 部·會 등 관련기관의 부책임자들을 위원으로 초빙하며, 모두 무보수직으로 초빙기간은 1년이고 연속으로 초빙되면 이를 연임할 수 있다.
3. 본 회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각 部·회간의 홍콩·마카오사무에 관한 협조와 연계 사항
 - (2) 홍콩·마카오정책사업계획 또는 방안과 관련된 연구 협의사항
 - (3) 홍콩·마카오사업법의 제정(수정)에 관련된 초보적 심의사항

(4) 기타 홍콩·마카오업무와 관련된 사항

4. 본 회보는 매월 1차례 회의가 개최되며 소집인이 이를 소집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초청인사가 배석하여야 한다.
5. 본 회보에는 집행비서와 부집행비서 각 1인을 두어 본 회보의 소집과 통일적인 관리를 협조한다. 필요한 업무 인원은 대륙위원회의 편제인원 한도내에서 파견·조정한다.
6. 본 회보의 결의사항은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의 공문을 통과하거나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7. 본 요점은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 후 시행하며, 그 수 정도 역시 같다.

Ⅲ. 入出境規定

大陸地區住民의臺灣에서의病問安 및弔問申請作業要點

○民國81年(1992年)1月14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法字 第0160號函 修
正

1. 申請對象

1. 大륙지구주민으로 대만에 그 부모·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면 대만에 병문안 또는 조문신청을 할 수 있다.

(1) 중병에 걸리거나 증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독한 경우

(2) 중병에 걸리거나 증상을 당하고 연령이 80세를 초과하여 행동이 불편한 경우

(3) 사망한 지 1년이 안된 경우

2. 대만에 있는 형제자매의 연령이 70세를 넘었거나 중병·증상에 처한 경우(대륙지구의 의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그 배우자도 대만의 동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申請方式

1. 大륙지구

신청인이 대륙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홍콩지구를 거쳐 대만으로 와야 하며, 대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는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약칭한다)에 송부하여 처리하며, 대만의 친우가 대리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모·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의 병문안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해외 및 홍콩·마카오지구

(1) 신청인이 이미 홍콩·마카오지구에서 도착하여 있는 경우는 홍콩 금중가(金鐘道) 89호의 판타센터(芬達中心) 東건물(東座) 4층 홍콩 중화여행사에 신청(또는 구룡 하문전자유가《何文田自由道》 2호 홍콩 구제위원회내의 대륙동포 대만방문사무처를 통해도 된다)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여행증을 발행하면 대만의 친속이나 중화여행사에 보내어 전달한다.

(2) 신청인이 이미 해외지구에서 도착하여 있는 경우는 해외주재영사관 또는 외무부의 권한위임기구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여행증을 발행하여, 대만의 친속이나 해외영사관(기구)에 보내어 전

달한다.

3. 具備書類

- (1) 여행증신청서 1부 (상반신 증명사진 4장 첨부)
- (2) 보증서 1부
- (3) 신청인의 기한내 출국서약서 1부(대륙지구에서 거주하는 자는 홍콩에서 여행증을 수령할 때 작성한다)
- (4) 공립병원이나 위생청(衛生署)의 감사에 합격한 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류
- (5) 병문안·조문대상인의 호적등본 등 부모·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제3지구의 재입국비자나 제3지구거류증 또는 홍콩 신분증 사본 (신청인이 대륙에 있어 아직 제3지구의 재입국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홍콩도착 후, 홍콩정부가 발급한 홍콩귀환증명을 근거로 중화 여행사에 대만방문여행증을 신청한다)
- (7) 등록수속비 대만화 200원

4. 其他規定

- (1) 병문안의 경우는 의원이 진단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2) 조문의 신청은 사망자의 사망 후 1년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3) 신청인이 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4) 신청인의 입국검사시 병문안·조문증명서 이외에 귀환비행기표 및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그 유효기간이 반드시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등을 검사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비행기표가 없는 경우는 원래의 비행기로 송환한다.
- (5)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증공여권 또는 통행증 및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는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공항사무소가 보관(보관증 수령)하였다가 출국시 되돌려 준다.
- (6) 신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경찰파출소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 (7) 신청인의 대만체류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현(도) 경찰국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이 1차에 한하여 체류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8) 입국검역은 행정원 위생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9) 신청인·대리신청인·보증인은 서약서상의 사항들

을 숙독하고 책임을 보증한다.

(10) 본 작업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시로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한다.

附註：본 작업요점은 민국 79년(1990년) 6월15일전에 행정원대륙공작회보 陸79陸政字 第687號에 의해 반포된 「현단계대륙동포의대만친지병문안및조문신청작업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大陸地區에居住하는臺灣地區住民의養父母· 養子女의臺灣親知訪問·病問安·弔問審査規定

○民國81年(1992年) 2月29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1)陸法字 第0960號函

대륙지구에 거주하는 대만지구주민의 양부모·양자녀가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만 친지방문·병문안·조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수양관계가 민국38년(1949년)이전에 발생하고 대만지구의 호적자료 또는 기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
2. 수양관계가 민국39년(1950년)에서 76년(1987년)11월1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대만지구의 호적자료 또는 대만지구법원의 재정(裁定) 인가서 또는 해기회(海峽兩岸基金會)의 검증을 거친 중공,관방의 증명서류를 구비한 경우

大陸地區住民의臺灣居留 또는定着申請作業要點

- 民國80年(1991年)12月9日 行政院 大陸研究會(80)陸法字 第3536號函
- 民國81年(1992年)5月14日 行政院 大陸研究會(81)陸法字 第1866號函 修正

1. 신청인이 대만지구주민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연령 70세이상·12세이하 자이면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과 대만지구주민이 결혼하여 이미 만 2년이 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입국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전 항 신청인의 민국76年(1987년) 11월1일 이전에 중혼한 배우자는 신청전에 반드시 후혼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3. 제2항의 대륙지구주민은 입국일로부터 대만지구에 계속해서 만 2년간 거주한 후,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4. 본 요점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하는 대륙지구주민이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그 입국허가를 취소하고 기한내에 출국해야 한다.

- (1) 국가안전 또는 사회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 (2) 범죄 행위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는 자
- (3) 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신분을 속이고 신청하거나 입국한 자
- (4) 결탁·공모하여 허위결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는 자

전 항 각항의 주민이 이미 호적등기를 한 경우는 이를 취소하고 기한내에 출국한다.

5. 신청인의 연령이 70세이상인 자의 대만정착신청 및 제2항의 대륙지구주민의 대만거류신청은 아래의 방식에 의해 신청한다.

(1) 대륙지구에 있는 경우는 홍콩지구를 경유하여 대만으로 와야 하며, 대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중국재난동포구조총회(中國災胞救助總會)에 대리신청하여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 (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약칭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대만의 친우가 대리신청하는 경우는 대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위탁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홍콩·마카오지구에 도착하는 경우는 홍콩구룡구제위원회 (港九救濟委員會：九龍 何文田 自由道 二號)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3) 홍콩·마카오 이외의 기타 자유지구에 도착하는 경우는 주외영사관·대표처·사무처 또는 기타 외교부의 권한 위임기구에 신청하면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신청인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면서 대만에 거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륙지구를 떠나 홍콩·마카오 또는 기타 자유지구에 도착한 후 전 항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단, 친생부모 또는 모친과 동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대만정착 또는 거류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신청한다.

(1) 정착 또는 거류신청서 1부 (사진 4장 첨부)

(2) 대륙거주민신분증사본·홍콩·마카오 통행증사본 또는 중공여권사본 1부

(3) 친지의 입국보증서 1부

(4) 대만에 있는 친속의 호적등본등 친속관계·결혼일자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후혼배우자의 동의서 1부 (제2조 제2항의 상황에 적용한다)

(6) 해외에 도달한 경과설명서 (홍콩·마카오 이외의 기타 자유지구에 도착한 경우)

(7) 대리신청위탁서 1부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8) 증명서수속비용 대만화 500만원

정착허가를 거친 경우에는 입국증과 「호적등기신고허가」가 기재된 입국증 부분(副本)을 발급하며, 입국 후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호적등기를 한다.

제2항의 증명서류를 대만 재외영사관·대표처·사무처 및 기타 외교부의 권한 위임기구로 보내거나 중국재난동포구조총회(中國災胞救助總會)에 보내어 홍콩구룡구제위원회(港九救濟委員會)에 전송하여 신청인이 직접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거류증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으로 바꾸어 수취하여 대만에 체류한다.

7. 제1조의 상황에 부합하여 이미 입국한 자가 대만정착신청을 하거나 제2조의 주민이 제3조의 거주기간을 채운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류지 시·현(市)경찰국에 보내어 전과조회·행실조사한 자료를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한다.

(1) 정착신청서 1부 (사진 2장 첨부)

(2) 정착보증서 1부

(3) 대만지구여행증 또는 거류증

(4) 대만에 있는 친속의 호적등본 등 친속관계를 충분히 증명하는 증명서류

(5) 유동인구등기명부 (거류증을 가진 경우에 적용한다)

(6) 증명수속비용 대만화 500원

허가를 거친 후 「호적등기신고허가」가 기재된 입국증 부분을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호적등기를 한다.

8.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거류유형 및 매년의 정액인원 수는 다음표의 규정에 의한다.

〈중화민국81년 대륙지구주민 대만지구 체류인원표〉

	유 형	1년 정액인원	비고
1	민국 76년(1987년) 12월2일 이후 대만지구의 주민과 결혼하여 만 2년이 되었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대만에 오는 거류자	120명	
2	민국 76년(1987년) 11월1일 이전에 대만지구의 주민과 결혼한 대만에 오는 거류자	120명	
3	합 계	240명	

9. 제8조의 유형 및 정액인원은 월평균으로 분배하며, 심사신청 합격일자의 선후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달의 정액을 미리 쓸 수는 없다.

전 항의 각 유형별 잔여인원을 기타 유형으로 옮겨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附註：본 작업요점 실시 후, 민국 80년(1991년) 5월8일 행정원 대륙위원회(80)陸法字 第0961號函에 의해 반포된 「대륙동포의대만정착신청규정」은 적용을 정지한다.

臺灣地區住民의在大陸地區養子女 臺灣居住申請審議基準

○民國80年(1991年)12月24日 行政院大
陸委員會(80)陸法字 第3765號函 修正

1. 부양인은 대만지구에서 혼인하지 아니하고 자녀 및 양
자녀가 없어야 한다.
2. 피부양인의 연령은 12세 이하인 자로 한다.
3. 양자녀로 대만에 올 수 있는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4. 부양관계는 반드시 대만지구법원의 재정(裁定)인가를
거쳐야 한다.

大陸地區에滯留하는住民의臺灣 親知訪問·定着申請作業要點

○民法81年(1992年)3月19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法字 第1066號函

1. 申請資格

대륙지구에 체류하는 주민이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만의 친지방문 또는 정착신청을 할 수 있다.

- (1) 民國 34년(1945년)후 병역관계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적의 전 국민당군 인원이 대만성·대북시·고웅시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국방부의 결정을 거친 경우
- (2) 民國 38년(1949년)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작전 또는 특종임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포로가 된 전 국민당군 관병(官兵)
- (3) 民國 38년(1949년) 정부의 대만천도 이전에 공비(公費)로 대륙지구에서 유학하고 현재도 대륙지구에서 체류하는 자

대만지구에 원적이 있으나 현재도 대륙지구에서 체류하는 주민이 다음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만의 친지방문 또는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 (1) 민국 38년(1949년)정부의 대만천도전에 대륙지구에 간 대만원적동포가 대만지구에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2) 민국 76년(1987년) 11월1일 이전에 선박고장·해난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여전히 대륙 지구에서 머무르고 있는 어민 또는 선원
-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대만 친지방문 또는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2. 申請方式

신청인의 대만친지방문 또는 정착은 아래의 방식으로 신청한다.

(1) 대륙지구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홍콩을 경유하여 대만에 와야 하며 대만의 친우가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약칭한다)에 대리 신청한다.

(2) 해외 및 홍콩·마카오 지구

신청인이 이미 해외 또는 홍콩·마카오지구에 도달한 경우는 대만의 재외영사관 또는 외교부의 권한위임기구 혹은 홍콩중화여행사(홍콩 金鐘道 89호 판타센타 동좌 4층)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허가 후의 입국증 발급은 대만의 친속 또는

재외영사관(기구)·중화여행사에 보내어 전달한다.

전 항의 제1·2항의 신청에 있어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만의 친속이 신분검사표를 동일양식으로 3부 작성하여 국방부에의 신분조회에 하자가 없으면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한다. 대만 친지방문 신청자가 대만체류기간에 호적을 바꾸어 정착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시·현(시) 경찰국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3) 대만에 친지방문 또는 정착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관련서류를 전부 구비해야 한다.

① 정착신청서 (대만에 정착하러 오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는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여행증신청서 (대만에 친지방문하러 오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부 (반 명함판 사진 4장 첨부)

②보증서 1부

③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신분검사증 신청표 동일양식 3부 (신청자격항목의 제1항 제(2)번 신청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선박고장·해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신청자격의 제2항 제(2)번 신청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위탁서 1부 (대만친속외의 기타 대리로 수속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증명수속비 대만화 200원

(4) 기타규정

- ①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②신청서의 「현직」·「전직 근무기관 및 직위」·「중공당·정·군의 전문인원인지의 여부」란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만일 은닉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때에는 조회를 거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한다.
- ③신청자격의 제1항 제(2)번의 신청인 및 그 친속은 호적설정 후 5일 이내에 입국증부분(사본) 및 호적등본(사본)을 국방부에 보내어 조사받아야 한다.(대북시 木柵郵政 90014號 사서함)
- ④대만에 친지방문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년 1차례 신청하며, 매회의 대만체류기간은 2개월이내로 제한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에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현(시) 경찰국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에서 1차례, 1개월동안에 한하여 체류연기를 할 수 있다.
- ⑤신청인이 대만에 병문안 또는 조문하는 경우는 일반 대륙지구주민에 준하여 처리한다.

附註：본 작업요점은 이전의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民國 78年(1989年) 11월10일 臺78陸行字665號函에 의해 반포된 「대륙에 체류하고 대만적을 갖고 있는 전 국민당군 인원 및 가족의 대만정착신청 작업규정」· 民國 79年(1990年)5월16일 臺79陸行字第514號函의 「작전 또는 특종임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포로가 된 (재난을 당한) 전 국민당군 관병 및 가족의 대만정착신청 작업규정」과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民國 80年(1991年) 5월9일(80) 陸法字第 0986號函에 의해 반포된 「대륙체류 대만적 동포의 대만친지방문신청 작업규정」 등 3종의 작업규정을 합병수정한 것이다. 본 작업요점 실시후에는 앞의 3가지 작업규정은 그 적용을 정지한다.

現段階公務員의在大陸親屬 臺灣親知訪問申請作業要點

○民國 81年(1992年) 1月15日 行政院
大陸委員會(81) 陸法字 第0187號函
修正

1. 適用對象

현행규정에 의해 대륙친지방문을 할 수 없는 공무원·군인·경찰의 대륙에 있는 배우자 및 삼촌이내의 혈족(연령이 70세이상이거나 중병·중상자인 경우는 그 배우자 1인과 동행하여 대만에 올 수 있다)

2. 申請方法

(1) 대만지구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 홍콩지구를 경유하여 대만으로 와야 한다. 대만에 있는 방문대상인은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內政部 警政署 入出境管理局: 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칭한다)에 대리 신청한다. 기타 대만에 있는 친우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지방문대상인의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해외 및 홍콩지구

①신청인이 이미 홍콩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에는 홍

콩 금종가(金鍾道) 89號 판타센터 (芬達中心) 동건물 (東座) 4층 홍콩 중화여행사에 신청하여야 하며(또는 九龍 何門田 自由道 2號 9港에 위치하고 있는 救濟委員會內的 대륙동포대만방문서비스처를 거쳐 신청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②신청인이 이미 해외 기타지구에 도착해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재 영사관 또는 외무부의 권한위임기구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3. 具備書類

- (1) 여행신청서 1부 (2인치 상반신사진 첨부)
- (2) 보증서 1부
- (3) 기한내에 대만에서 출국한다는 신청인의 서약서 1부
- (4) 신청인과 친지방문대상인의 호적등본 등 신분과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친지방문대상인의 재직증명서류
- (6) 제3지구로 재입국하는 비자 또는 제3지구의 거류증이나 홍콩 신분증사본(신청인이 대륙에 있으면서 아직 제3지구의 재입국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홍콩에 도착한 후에 홍콩정부가 발급하는 홍콩으로 귀환한다는 증빙서류에 의거해 중화여행사에서 대만에 올 수 있는 여행증을 수령한다)
- (7) 대륙지구의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8) 증명서수속비용 대만화 200원

4. 其他規定

- (1) 대만친지방문은 1인당 매년 한 차례로 제한하며, 매 회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내로 한정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10일 전에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현 경찰국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심사하여 체류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개월이내로 한다.
- (2) 국가비상총동원시기(動員戡亂時期) 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원래 대만에서의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대륙으로 잠행도주한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
- (3) 신청인 입국검사시에 대만친지방문 여행증을 검사하는 외에 또 귀환비행기표 및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 등 (유효기간이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을 검사하며, 증빙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귀환비행기표가 없으면 원래 비행기로 송환한다.
- (4) 신청인이 소지한 증공여권 또는 통행증 및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는 입국시에 출입국관리국 공항사무소에 제출·보관하며(영수증을 교부함) 출국시에 반환한다.

- (5) 신청인은 입국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경찰파출소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 (6) 본 작업규정중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검토하여 그것을 수정한다.

附註：본 작업의 요점은 민국 79년(1990년) 5월26일전의 행정원 대륙공작회보(大陸工作會報) 臺79陸行字第560號函에 의해 반포한 「현단계 공무원의 재대륙친속 대만방문신청작업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臺灣地區住民이大陸地區를訪問하고有效的 査證없이臺灣入國을申請하는때의作業要點

○民國81年(1992年)1月14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 陸法字 第0149號函

1.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가서 유효한 사증없이 대만 입국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가서 유효한 사증없이 대만 입국을 신청하는 때에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면 개별안으로 처리한다.
 - (1) 대륙지구에서 2년미만을 거주한 경우
 - (2) 대륙지구에서 중병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2년이상 4년미만을 계속 거주한 경우
 - (3) 대만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전사(戰士) 지원토지에 의거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3. 申請方式

홍콩의 중화여행사 또는 해외주재영사관(기구)에 신청하면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하 출입국관리국으로 약칭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대륙에 있는 자는 대만의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타인이 출입국관리국에 대리

신청한다.

4. 具備書類

- (1) 입국신청서 1부
- (2) 이전에 수령한 출입국증명서류 또는 분실신고증명
- (3) 증명서류
- (4) 대리신청위탁서 1부 (타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입국허가자에게 유효기간 3개월의 입국증을 발급하며 입국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입국증은 원래의 심의·이첩기관으로 보내져 발급되거나 대리신청인이 수령한다.

6.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가서 불법으로 대만으로 입국하는 때의 처리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공항 또는 항구에서 입국 즉시 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입국할 수 없으며 원래의 비행기나 배로 송환한다. 단, 다음 항의 각 상황중에 하나에 해당되어 출입국관리국이 입국을 허가한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이미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는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조사·처리하며 검찰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재신청하여 입국수속을 다시 처리한다.

① 입국신청서 1부

②기소서 또는 불기소처분서 1부

③원래의 대만에서의 신분증·호적명부사본 또는 호적
등본 1부

現段階外蒙古人士의臺灣訪問申請作業要點

○民國80年(1991年)9月25日 蒙藏委員
會 臺(80)會蒙字 第1927號函

1. 申請資格

외몽고인사중 다음 경우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만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1) 대만에 배우자 또는 3촌이내의 친척이 있어 대만친척방문을 신청하는 경우
- (2) 대만지구의 제조업자 또는 경제단체가 대만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 (3) 외몽고 또는 해외자유국가 및 지구에 있어서 발전잠재력을 갖춘 학자 또는 학생이 대만지구의 관련기관·학교·단체의 요청(또는 허가)를 거쳐 대만참관방문 또는 연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 (4) 기타 정부기관·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방문을 초청하는 경우

2. 申請方式

중화민국 해외주재영사관(기구)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를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로 송부한다. 신청인이 외몽고에 있는 경우는 대만의 관련기관·학교·단체

· 제조업자· 친우가 몽장위원회에 대리신청하며, 심의통과후 신청서류를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이첩하여 심사비준후 여행증을 발급하여 해외주재영사관(기구)이나 대만의 대리신청기관· 학교· 단체· 제조업자· 친우에게 송부한다.

3. 具備書類

- (1) 여행신청서 1부 (2인치 상반신사진 4장 첨부)
- (2) 외몽고인사의 신분 및 신청자격증빙서류
- (3) 제3지구의 재입국비자 또는 제3지역의 거류증(해외 거주자에 한함)
- (4) 대리신청위탁서 1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5) 증명수속비 대만화 200원

4. 其他規定

- (1) 대만의 대리신청단체는 신청인에 대한 배경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방문 후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입국시에 대만여행증의 검사외에 귀환비행기표 또는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 등을 검사하며 증명서류를 다 갖추지 못하였거나 귀환비행기표가 없는 때에는 원래의 비행기로 송환한다.
- (3) 신청인이 매회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내로 제한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

어 유효기간 만기10일전에 거주지의 시·현(시) 경찰국에 신청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첩하여 1차에 한하여 1개월 기한의 체류연기를 할 수 있다. 대만에 연구·연수로 입국한 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신청인이 대만체류기간중에 법령 또는 국가안전·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법처리하고 송환조치한다.
- (5) 신청인은 입국후 대만에서 장기거류 및 호적등기 수속을 할 수 없다.
- (6) 신청인은 대만체류기간에 있어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의 허가목적 이외의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면허증(허가증)이 필요한 전문행위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다시 대만에 들어올 수 없다.
- (7) 신청인은 입국후 3일이내에 거주지 경찰파출소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 (8) 신청인은 체류기간의 만기전에 출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는 몽장위원회의 협조로 출국을 최촉한다.

홍콩·마카오地區居住住民의 臺灣長期居留補充規定

○民國81年(1992年)4月21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港字 第1509號函

1. 홍콩·마카오정책의 실행과 이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만장기거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제공한다.
2. 홍콩·마카오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만에서의 장기거류는 국민의 입국·단기체류·장기거류 및 호적등기사업요점에 의거한 규정 이외에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홍콩·마카오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만에 장기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 (1) 배우자의 친생부모가 대만지구에서 호적을 올린 자
 - (2) 각급학교 교장(총장) 또는 교사를 담당하면서 공헌이 탁월하여 주관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자
 - (3) 특수영역의 응용공정기술에 업적이 있어 주관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자
 - (4) 전문기술능력을 갖추고 홍콩·마카오정부의 업무증명서를 이미 취득했거나 학술·과학·문화·언론전문분야

- 에서 특수한 업적이 있어 주관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자
4. 제3조의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경우 그 증명서류는 외부 또는 화교사무위원회의 홍콩·마카오주재기관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이첩하여 심사한다.
 5. 제3조의 주민은 입국일로부터 대만지구에서 계속하여 1년을 거류해야만 호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IV. 文教規定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 大陸地區文教活動從事作業要點

○民國81年(1992年)5月4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 陸文字 第1703號函

1.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해 특별히 본 작업요점을 제정한다.
2. 본 요점에서 문교활동이라 함은 학술·문화·종교·예술 또는 체육성격의 학술강좌·방문·강연·회의·전람회·경기 등의 활동을 가르킨다.
3. 기관(구)이 파견하는 공무원이 대륙지구에서 종사하려는 문교활동은 업무상의 필요 및 민간성격에 속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전 항의 공무원은 공무원근무법 제24조에 규정한 인원을 가르킨다. 단, 정무관(政務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려 가는 때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기관(구) 또는 공립학교는 각 해당 중앙주관기관을 거쳐 중앙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의법입안된 사립학교·법인 또는 비법인 주민단체는 중앙의 목적사업주관기관 및 중앙문교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관련 또는 기밀을 요하는 고급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연구인원은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전 항의 동의·허가 또는 신청을 거친 경우는 허가·동의 또는 비준심사서류를 가지고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에 출입국수속을 신청한다.

5. 기관(구)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단독 또는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 기구와 연합하여 회의·전람·강연·경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전 항의 활동에 종사하려 가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중앙문교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중앙문교주관기관 또는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은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의 파견인원의 대륙지구방문 이전에 적당한 방식으로 대륙지구에서 파견하는 인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 처리상황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7.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에서 간 인원의 每人當 1회 체류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인원은 대만에 돌아온 후 관련자료를 중앙문

교주관기관이나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에 송부하여 검사하고, 사본을 행정원대륙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8. 본 요점의 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에 가는 인원은 대륙지구에서의 체류기간중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을 위배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9. 본 요점을 위반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0. 중앙문교주관기관 또는 목적사업주관기관이 본 요점에 의거하여 다른 작업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즉시 행정원대륙위원회에 송부해 비치한다.

附註：본 작업요점 실시후 民國 80年(1991年) 5월20일 행정원대륙위원회(80)陸文字第1093號函에 의해 반포된 「현단계의 문교기구·민간단체파견인원의 대륙지구방문 작업요점」과 民國 80年(1991年) 6月7日 교육부臺(80)文字第28860號函에 의한 「현 단계의 문교기구·민간단체파견인원의 대륙지구 방문 작업요점규정」은 모두 적용을 정지한다.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 大陸地區文教活動從事作業規定

○民國81年(1992年)5月22日 教育部臺
(81)文字 第27038號函

1. 본 작업규정은 「기관(구)·학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는 대륙지구 문교활동종사 작업요점」 제10조에 의거해 제정한다.
2.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에서 파견한 인원은 대륙지구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성격의 학술강좌·방문·강연·회의·전람회·경기 등의 문교활동에 종사한다.
3. 기관(구)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대륙지구에서 종사하는 문교활동은 업무상의 필요 및 민간성격에 속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단, 파견인원이 대륙지구에 가서 회의·전람회 또는 경기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또는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협력하여 주관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공무원은 공무원근무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인원을 가리키나 정무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일률적으로 자체 조달한다.

5. 학교의 파견인원이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려 가는 경우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혹은 기타 휴가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교활동에 종사하려면 활동일자 2개월전에 아래의 방식에 의해 신청·처리해야 한다.

(1) 기관(구)·공립학교는 각 해당 중앙주관기관을 거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의법입안된 사립학교·법인 또는 비법인 주민단체는 중앙목적사업기관 및 교육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3) 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회의·전람회 또는 경기활동을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지구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때에는 중앙주관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학교에서 학생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학생교류활동 작업요점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7.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文教活動에 종사하려 가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 신청 또는 심의의뢰기관에서 정식으로 비치하는 서류
 - (2) 입안증명 : 주민단체는 의법입안증명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획서 : 활동의 성격·내용·기간·일정 및 경비출처 등을 포함한다.
 - (4) 인원명단 : 성명·성별·본적·생년월일·신분증번호·근무처·현직·병역상황·호적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 (5) 초청장 : (초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는 자는 면제한다.
 - (6) 근무처허가서류 : 기관(구) 종사자는 출장서를 제출해야 하고 학교종사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에 대해 교육부는 필요시에 각부 통합심사소조에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단, 국방에 관련되거나 기밀을 요하는 고급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심사소조에 심의를 상정한다.
9. 기관(구)가 대륙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문교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이 동의·허가·신청서류 증인 경우에는 동의·허가 혹은 비준구비서류를 가지고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수속을 한다.

10. 교육부는 대륙지구에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지도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에 가는 경우는 매1인당 매회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인원은 대만에 돌아온 후 관련자료를 점검하여 교육부나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에 보고비치하고 사본을 행정원대륙위원회에 송부한다.
12. 본 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에 가는 인원은 대륙지구에서의 체류기간중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13.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상관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機關(構)·學校·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 大陸地區文化活動從事作業規定

○民國81年(1992年)5月29日 行政院 文
化建設委員會 81 文建貳字 第4909號
函

1. 본 작업규정은 「기관(구)·학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는 대륙지구 문교활동종사 작업요점」 제10조에 의거해 제정한다.
2. 기관(구)·학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양 지구의 문화재보호와 발양을 강화하고 민족예술의 전래와 발양을 강화하며 양 지구의 문자통일연구업무를 추진하는 등의 문화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경우는 본 작업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3. 기관(구)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경우는 업무상의 필요나 민간 성격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전 항의 공무원은 공무원근무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인원을 말한다. 단, 정무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으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때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일률적으로 자체조달한

다.

5.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활동기간 2개월전에 아래의 방식에 의거하여 신청·처리한다.

(1) 기관(구)·공립학교는 각 해당 중앙주관기관에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이하 文建會라 약칭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의법입안된 사립학교·법인 또는 비법인 주민단체는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 및 문건회에 신청한다.

(3) 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을 단독 또는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경우는 중앙기관에 신청을 거쳐 문건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기관(구)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을 단독 또는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협력하여 주관해서는 아니된다.

7.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려 가는 것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신청서 : 신청 또는 심의의뢰기관에서 정식으로 비치하는 서류

(2) 입안증명 : 주민단체는 의법입안증명서류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획서 : 활동의 성격 · 내용 · 기간 · 일정 및 경비출처 등을 포함한다.

(4) 인원명단 : 성명 · 성별 · 본적 · 생년월일 · 신분증번호 · 근무처 · 현직 · 병역상황 · 호적 및 주소(전화) 등을 포함한다.

(5) 초청장 : 주동적으로 가는 자는 제출이 면제된다.

(6) 근무처허가서류 : 기관(구) 종사자는 출장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종사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 문건회는 기관(구) · 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에 대해 필요시에 각부 통합소조에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9. 기관(구)이 대륙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이 동의 · 허가 및 신청서류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 · 허가 또는 비준구비서류를 가지고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수속을 한다.

10. 문건회는 대륙지구에서 문화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인원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지도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 의거하여 대륙지구에 가는 인원의 1인당 매 회 체류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인원은 대만에 돌아온 후 관련자료를 점검하

여 문건회 및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에 보고비치하고 사
본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송부한다.

12. 본 규정에 의거해 대륙지구에 가는 인원은 대륙지구에
서의 체류기간중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
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
리한다.

13. 기관(구)·학교 또는 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
구에서 상술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것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상관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公務員의大陸地區文教活動從事注意事項

○民國81年(1992年)6月1日 行政院 人
事行政局81局參字 第19473號函

1. 공무원이 대륙지구에서 파견되어 민간성격의 문교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특별히 본 주의사항을 제정한다.

전 항의 공무원은 대륙지구에서의 체류기간중에 관련 법령 및 국가통일강령의 지도원칙의 준수이외에 본 주의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대륙지구에서 문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1) 활동참가시 우리에게 대한 호칭 및 관련처리에 부당한 곳이 있으면 즉시 경정을 교섭하거나 입장을 천명한다.

- (2) 활동과정중에 중국관방인사가 참가하는 경우를 당하면 양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며, 중국관방인사와 단독으로 기념사진을 찍거나 회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피할 수 없는 때에는 태연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 (3) 각 항의 활동에 참가하여 기본예의를 유지하며 일체

의 부당한 언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중국의 국기와 국가에 직면한 때에는 거수로 경의를 표하거나 합창을 해서는 아니된다.

(4) 이번 방문과 무관한 중공관방 또는 통일전선기구의 활동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중공의 어떠한 금전(회의 거마비 포함)·귀중한 물품 및 선명한 통일전선의 표지 또는 의의가 있는 선물·기념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어떠한 형식의 협의나 공동선언발표에 단독으로 조인해서는 아니된다.

(7) 중공의 통일전선선전에 호응해서는 아니되며, 대륙의 매체 또는 인원의 우리에게 대한 잘못된 보도나 왜곡된 설명에 대해서는 적시에 해명하거나 무마해야 한다.

(8) 사전에 비준을 거친 활동에는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중도에 이탈하여 개인적인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사전 심의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대륙의 기타지역을 여행할 수 없으며 독단적으로 대만귀국을 연기해서는 아니된다.

(10) 특수한 연고로 인한 심의비준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1) 대만에 돌아온 후에는 대륙지구에서 종사한 문교활동의 상황·경험한 문제·채택한 응대방법 및 참고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건의를 근무처 및 중앙문교주관기관·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한다.
3. 공무원이 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機關(構)·宗教團體가人員을派遣하는 大陸地區宗教活動從事作業規定

○民國81年(1992年)5月25日 內務部 臺
(81)內民字 第8103620號函

1. 본 작업규정은 「기관(구)·학교·단체의 인원을 파견하는 대륙지구문교활동종사업무요점」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2. 기관(구)·종교단체는 대륙지구에서 전도·포교·방문·강연·회의·전람회 등 종교와 관련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을 파견한다.
3. 기관(구)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대륙지구에 종사하려는 종교활동은 업무상의 필요 및 민간성격에 속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단, 파견인원이 대륙지구에서 회의·전람회 등의 활동을 단독으로 또는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협력하여 주관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공무원은 공무원근무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인원을 가리키나 정무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구)·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일률적으로 자체조달한다.

5. 종교단체의 파견인원이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경우, 학생신분인 때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또는 기타 휴가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구) 또는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려면 활동일자 2개월전에 아래의 방식에 의해 신청·처리해야 한다.
 - (1) 기관(구)의 인원은 각 해당 중앙주관기관을 거쳐 내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의법입안되거나 등록된 종교단체(사찰·교회단체 및 재단법인 포함)는 해당 종교단체의 사찰이나 법인의 주소소재지 성(省)이나 시(市)정부에서 먼저 심의한 후 하자가 없으면 내무부에 계통보고하여 처리한다.
 - (3) 종교단체의 파견인원은 대륙지구에서 종교성격과 관련있는 회의·전람회 등의 활동을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대륙지구의 주민·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때에는 내무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기관(구) 또는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 기관(구) 또는 종교단체 명의의 정식서류
 - (2) 입안 혹은 동기증명 : 종교단체가 법에 의거하여 입안

하거나 등록된 증명서류 사본

(3) 활동계획 : 활동 · 시간 · 목적 · 방문대상 · 내용 · 예정 일정 및 경비출처 등을 포함한다.

(4) 활동참가인원명단 : 성명 · 성별 · 본적 · 생년월일 · 신분증번호 · 근무처 · 현직 · 병역상황 · 호적소재지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5) 초청장 : (초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는 자는 면제한다.

(6) 신분증명서사본

(7) 근무처허가서류 : 기관(구) 종사자는 출장증을 제출해야 하고 단체종사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기관(구) 또는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에 대해 내무부는 필요시에 해당부처 심사소조에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단, 국방에 관련되거나 기밀을 요하는 고급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심사소조에 심의를 상정한다.

9. 기관(구) 또는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려는 신청안이 동의 · 허가 · 신청계류중인 경우에는 동의 · 허가 또는 비준구비서류를 가지고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수속을 한다.

10. 내무부는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인

원에게 적당한 방식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 본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에 종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매1인의 매회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2. 대륙지구에 종교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가는 인원은 대륙체류기간중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13. 종교단체가 대륙지구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고 대만으로 돌아온 뒤에는 1개월내에 관련자료를 점검하여 내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사본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4. 대륙지구에 종교활동에 종사하러 가는 것을 신청하는데 관련된 기타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附註：내무부 79년(1990년) 10월15일 臺(79) 內民字第 840294號函에 의해 반포된 「현단계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는 대륙지구종교활동종사 작업규정」은 81년(1992년) 5월 25일자로 폐지한다.

現段階大陸專門人士・海外學者・留學生의 臺灣參觀訪問申請準則

○民國81年(1992年)2月25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法字 第0708號函 申請
繫留

1. 본 준칙은 「현단계 대륙인사의 대만참관·방문신청업무 처리요점」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2. 대륙인사 또는 단체 가운데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교육부에 대만참관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전문적인 조예를 갖고 있는 학술·문화·체육 및 연 예인사
 - (2) 현재 해외의 지역에서 연구하거나 연수하면서 학술적 지위나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륙의 학자나 유 학생신청인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교육부가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판정하며, 그 구성원은 중점내용을 심사하는 주관 기관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전문인사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대만방 문 2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만방문신청을 한다.

- (1) 신청인이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 재영사관이나 영사기구에 신청한다. 해외파견기구 또는 인원이 없는 국가나 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국 내의 접수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대리로 신청한다.
 - (2)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는 대만의 접수기관이 교육부에 대리로 신청한다.
4. 신청인은 반드시 대만에 있는 접수기관이 접수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접수기관은 신청인의 전문영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학교 또는 단체이어야만 하며 개인이 접수기관을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1) 참관방문계획서 : 신청인이 예상하고 있는 대만 참관 방문의 구상·개인적인 흥미 및 희망(참관기구·참관하고자 하는 장소 및 면담하고자 하는 인물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접수기관을 경유하여 작성하면 그 희망에 따라 적당한 활동을 안배한다.
 - (2) 여행증신청서 : 신청인마다 모두 신청서 1부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산처리업무에 맞추기 위해 검정 또는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한문정자로 작성하되, 최대한 간체자 사용을 피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작성방식은 표에 기입된 설명을 참조한다.

(3) 보증서

①보증인은 대만지구에 적을 올린 정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 공민으로 한정한다. 외국인이나 화교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만인 또는 교민단체는 보증인을 담당할 수 없다.

②보증인이 만일 공무원 신분인 경우는 우선 그 소속 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반 공민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호적 소재지 경찰기관의 보증에 대한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③만약 피보증인이 대만으로 오려는 일정이전에 제3국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란에 그 기입을 잠시 면할 수 있다. 단, 피보증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3국의 유효기간 6개월의 비자는 반드시 대만도착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입국시의 비자심사에서 하자가 없어야 입국할 수 있다.

(4) 대리위탁신청서 : 신청인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막론하고 대만에 있는 접수기관에 위탁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개인이나 단체 책임자의 친필서명 위탁서를 구비해야 하며, 만일 초청을 받아 대만에 오는 경우도 역시 초청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자가 친필서명한 동의서를 구비해야 하고 위탁자나 동의서 없이

대리 제출한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5) 전문적인 조예나 학술적인 지위 또는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 전문인사·해외학자는 자신이 얻은 영예나 훈장 및 전문적인 조예 또는 면허증이나 저작(저작이 많은 경우에는 저작연표를 부가하기 바람)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나 성적표 또는 교수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민간단체가 접수기관을 맡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의 등록증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최근 몇 년간의 행태를 파악해야 한다.

(7) 단체로 신청하여 대만에 오는 경우는 반드시 그 단원들의 명부(성명·성별·출생년월일·신분증번호·여권번호·현재주소 및 담당업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기타서류

6. 방문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하며, 만일 준칙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 개인이 진다.

7. 대륙인사가 대만을 참관·방문하는 경우에 교육부는 상황을 보아 대만을 참관·방문하는 인원의 숫자를 제한한

다.

8. 대륙인사가 연로하여 행동이 불편하고 건강상의 이유나 미성년자인 이유로 인하여 전담보호인이 필요한 경우, 다만 방문신청시에 같이 배우자나 직계친족 성년 1인의 동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절차는 대만방문 신청인의 신청기준과 규정에 의거하여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9. 「현단계 대륙인사의 대만참관 및 방문신청 처리요점」의 제4항 제7조의 이른바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가증이 필요한 전문적인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이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행위. 다만, 사전에 비준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공연장소는 문화·사회·교육기구로 제한한다.
 - (2) 면·허가증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 (3) 문서도안 및 레코드를 취입하거나 비디오 촬영·광고를 완성하여 직접적으로 대만에서 판매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10. 신청인은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에 시범·견학·교육·강연·연구 등 문교성격 또는 공익성 활동에는 종사할 수 있다.

11. 대륙인사가 대만을 참관·방문하는 기간에는 중화민국의 법령 및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에 종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참관·방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의 경중을 구별하여 구두경고를 하거나 참관방문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이 의법조치하며, 필요시에는 송환조치하며, 대만의 접수기관이나 초청기관의 다른 신청안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2. 대만에 참관·방문을 신청하는데 관련된 사항은 「대중예술사업에 종사하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보도관리규칙」·「대륙지구물품관리법」·「합락지구 출판물·영화필름·TV 방송프로그램의 본국자유지구반입관리요점」 등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3. 출판·영화·TV방송사업과 TV방송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전문인사는 행정원 신문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14. 해외의 대륙과학자로 대만에 와서 과학기술연구의 발전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5. 본 신청준칙은 실제필요에 따라 그것을 수정한다.

附註：본 신청준칙은 80年(1991년) 2월22일 교육부 臺(80)文字第08311號函에 의해 반포된 「현단계 대륙인사가 대만에 와서 참관·방문을 신청하는 작

업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그 실시일자는 별도로
교육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現段階在外大陸科學技術人士를臺灣에招聘하여 科學技術研究發展作業에參與시키는作業規定

○民國80年(1991年)9月7日 行政院 大陸
委員會(80) 陸文字 第2398號函 修正

1.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는 해외의 대륙과학기술인사를 초빙하여 과학기술연구발전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현단계 재외대륙과학기술인사를 대만에 초빙하여 과학기술연구발전에 참여시키는 작업요점」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초빙하는 대륙의 해외과학기술인사는 현재 해외의 자유국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理·工·醫·農學의 기초분야 및 응용연구에 뛰어난 업적과 함께 학문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나 특수한 영역의 응용공학기술상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어 대만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그 자격요건이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저명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차로 최근 5년동안 저작을 발표하여 학술상 매우 높은 지위를 지녀 국제적으로 추앙받는 자
 - (2) 저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전문직종에 4년이상 종사하여 성과가 있거나 응용과학

또는 기술상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

(3)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작업경험이 있는 사람

3. 해외의 뛰어난 대륙과학기술인사를 주동적으로 초빙하기 위해 본회는 각 방면을 통하여 해외거주 유명대륙과학기술인사의 명단을 수집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교학자에게 초보적인 평가를 거치게 한 후 본회의 사정을 거쳐 대만의 공·사립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그 자료를 나누어 보내어 그 수요에 따라 본회에 초빙신청을 제출한다.

4. 대륙과학기술인사를 초빙하는 신청수속은 특정한 과학기술연구항목이나 교원으로 임용하는 과목 또는 특정한 문제는 본회가 지정한 계획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청기일 40일전에 본회에 송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과학기술연구발전작업 참여계획서 1부

(2) 학력, 경력증명서류 및 최근 5년내에 발표한 중요저작 사본 각 1부

(3) 여행증신청서 1부 (2인치 상반신사진 4장 첨부)

(4) 보증서 1부

(5) 제3지구의 재입국비자(거류증)·홍콩신분증 또는 대륙여권이나 홍콩·마카오통행증 사본 등의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모두 2년이상이어야 한다.

(6) 초빙이유설명서

5. 본회는 대륙과학기술인사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격평가와 관련사항처리 등을 자문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을 두고 본 회의 부주임위원이 이를 겸임하며, 이 외에 9명 내지 11명의 위원을 본 회의 객원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직이나 매회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사비와 거마비를 지급한다.
7. 심사위원회는 실무상의 필요에 의해 심사소조를 구성하여 관련학과의 대륙과학기술인사의 자격을 분류심사하며 각 소조에는 1명의 소집인을 두고 심사위원회의 주임위원이 이를 겸임한다.
8. 각 심사소조는 대륙과학기술인사의 관련자료를 심의하고 그 내용이 본 사업규정의 초빙자격과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 회의 「특약초청강좌처리준칙」 및 「국외인재초빙귀국복무처리요점」에 규정된 대우기준(여비·거주보조금·대만에서의 연구교수비용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그 대우를 심사위원회에 건의하여 송부한 후 재심한다.
9. 필수구비서류작성 설명(심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으로 간체자의 사용을 피할 것)

- (1) 과학기술연구발전작업 참여계획서(한가지 양식 - 두가지 양식)

본 계획서에는 대륙과학기술인사가 대만에 와서 참여하는 과학기술연구항목이나 임용되는 학과를 기재하여야하고 본 회가' 제정한 계획서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 (2) 여행신청서 (3가지 양식)

세번째 양식의 규정에 의해 기입할 것.

- (3) 보증서 (4가지 양식)

보증서는 현재 대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보증인이 친필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화교단체는 모두 보증인이 될 수 없다.

- (4) 초빙이유설명서 (5가지 양식)

신청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빙하는 사유가 초청기관에 미치는 중요성과 신청기관의 본 초청안에 대한 협조조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 (5) 각 항의 형식은 초청되는 사람이 자필로 사실에 의거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만일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입국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두 초청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 프로그램取材·撮影·製作申請作業要點

○民國80年(1991年)9月10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0) 陸文字 第2416號函

1. 申請資格

- (1) 취재 : 대륙지구 각 주요뉴스사업 종사인원
- (2) 촬영 : 대륙지구의 영화사업자
- (3) 프로그램제작 : 대륙지구 텔레비전방송 사업자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공사업자

2. 申請方式

해외주재 대만영사관(기구)은 신청수리 후 신청서류를 행정원 신문국에 송부한다. 대륙지구에 있는 경우는 대만의 대중매체사업자가 행정원 신문국에 대리신청한다. 행정원 신문국은 전 항의 소정 신청자격 심사통과 후 신청서류를 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하 출입국관리국으로 약칭한다)으로 송부하여 심사완료 후 여행증을 발급하여 해외주재 영사관(기구)에 전달하여 발급하게 한다.

3. 具備書類

- (1) 취재 또는 촬영, 프로그램제작이나 유성출판물 제작

계획서 1부

(2) 여행증신청서 1부

(3) 제3지구 재입국비자 또는 제3지구 거류증 홍콩신분
증사본

(4) 대리신청위탁서 1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
다)

4. 其他規定

(1) 신청인이 국가비상총동원시기(動員戡亂時期)국가안전
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4항까지의 경우중 하나
에 해당되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대만의 신청단체는 우선 신청인의 배경에 대해 먼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실에 의거하여 신청서
를 대리작성하며, 만일 사실을 은닉하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대리신청인
이 책임을 진다.

(3) 신청인이 입국시에 대만방문 여행증 검사 외에 출국
예정비행기표, 제3지구의 재입국유효사증(그 유효기간
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을 검사한다. 서류가 '미비
하거나 귀환비행기표가 없는 때에는 원래의 비행기로
송환한다.

(4) 신청인이 중공여권·통행증 또는 제3지구의 유효한
재입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의 출

입국관리국 공항사무소에 보관하여(보관증 수령) 출국 시 돌려 받는다.

(5) 신청인의 대만체류기간은 매회 2개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특수상황의 신청허가자는 체류기간의 회수를 연장 또는 증가할 수 있다. 단, 매년의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6) 신청인이 대만체류기간중 법령·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법조치와 함께 송환 처리한다.

(7) 신청인의 대만체류기간중 주관기관은 상황에 따라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면·허가증이 필요한 전문적인 행위는 더욱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만에 다시 올 수 없다.

· 본 요점에 관한 신청준칙은 행정원 신문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現段階大陸大衆媒體人士의臺灣에서의 프로그램取材·撮影·製作申請準則

○民國80年(1991年)12月16日 行政院
新聞局(80) 強綜字 第22347號函

1. 申請資格

- (1) 각 주요 뉴스매체 소속의 편집, 취재 및 주요 행정 인원과 신문사·잡지사·통신사·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취재·촬영기자·편집·주필을 포함하는 취재참여와 관련된 기술엔지니어 및 주요 행정인원 등은 대만으로 취재방문할 수 있다.
- (2) 각종의 영화제작업자도 대만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 (3)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광고·녹화프로그램을 경영·기획·제작하는 사업은 대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2. 申請方式

- (1) 해외주재 대만영사관(기구)은 신청수리후 신청서류를 행정원 신문국에 송부한다. 신청인이 대륙지구에 있는 경우는 대만의 대중매체사업자가 행정원 신문국에 대리신청한다. 행정원 신문국은 전 항의 소정의 신청자

격 심사통과 후 신청서류를 내무부 경찰국 출입국관리국으로 송부하여 심사완료 후 여행증을 발급하여 해외주재 영사관(기구)에 전달하여 발급하게 한다.

(2) 신청인은 소속기구의 파견명령 및 그 신분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대만이 대중매체사업자에 대리신청을 위탁하는 때에는 친필로 서명한 위탁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4) 취재신청인은 대만에 온 후, 입국허가증을 근거로 행정원 신문국에 취재증의 등기신청을 한다. 단, 특정한 주제의 취재활동은 행정원 신문국에서 발행한 취재증 외에도 주관기관이 취재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

(5) 촬영 및 프로그램제작의 신청인은 대만에 온 후, 행정원 신문국에서 발급한 비준서류를 휴대하여 증명한다.

(6) 신청인은 대만방문 2개월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취재의 특별한 필요에 의한 신청서 제출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接待機關

(1) 신청인이 대만에 와서 프로그램을 취재·촬영·제작하는 때에는 관련민간단체가 접대사항을 처리한다.

(2) 특정한 주제의 취재활동은 주관단위가 접대를 안배한다.

4. 申請人數

(1) 취재를 신청한 안전의 인원수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일반적인 취재활동 인원수는 행정원 신문국이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②특정주제·중요한 정치·학술·문화·체육·과학기술 등과 같은 것은 취재활동은 전문안전으로 처리하며, 행정원 신문국이 장소규모 및 신청시간의 선후등을 참고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비취재성 신청안전에 대해 행정원 신문국은 필요에 따라 영화·텔레비전방영·프로그램공급사업자의 대만에서의 프로그램촬영·제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5. 商業行爲의 制限

(1) 「현단계 대륙대중매체인사의 대만에서의 프로그램취재·촬영·제작 신청작업요점」 제4조 제7항의 「상업행위 종사금지와 면허·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종사금지」조항은 신청인이 대만체류기간동안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킨다.

①보수를 받는 행위

②순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

③계약을 맺어 면허·허가증이 필요한 직업적인 공연

에 출연하는 행위

- ④ 문서 도화를 완성하고, 레코드를 취입하고, 비디오 프로그램촬영·광고·영화필름을 직접 대만에서 판매 또는 방송·방영하는 행위

(2) 신청인은 대만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시범·참관이나 공익적인 활동의 공연에 종사할 수 있다.

6. 신청인은 대만에 체재하는 기간에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인터뷰를 받을 수 있으며, 전 항에서 규정한 조항과 「현단계 텔레비전방송사업·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의 대륙지구에서의 프로그램제작신청 실시요항」 제5조 방송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그 방송시간을 위에서 서술한 「실시요항」 제8조의 시간횟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신청인은 대만체류기간중에 중화민국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신청서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취재·촬영·제작을 진행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기관이 의법처리한다. 위 신청기관이나 접대기관이 후속으로 신청접수한 안전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8. 신청인의 대만에서의 프로그램취재·촬영·제작내용이 실정을 왜곡하는 경우, 행정원 신문국은 해당 신청인 및 그 소속사업사의 후속신청안전에 대해 수리하지 아니한다.

9. 신청인이 휴대한 설비기재 및 도구는 입국시 행정원 신문국이 심의비준한 공문을 근거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와야 한다. 출국시에는 그 숫자대로 휴대하여 돌아가야 하며,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10. 申請具備書類

(1) 계획서

본 계획서는 신청인이 예정하고 있는 대만방문 목적에 맞아야 하며, 그 활동주제와 구상하고 있는 여정계획을 서술하여 접대기관의 일정안내에 참고가 되게 한다. 프로그램의 촬영·제작 신청안건에서 첨부한 극본과 신청인이 대만에서 프로그램취재·촬영·제작하는 것이 원래의 극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후속신청안건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여행증신청서

흑색이나 청색의 펜을 사용하여 한문정자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다.

(3) 제3지구 재입국비자 혹은 제3지구 거류증 또는 홍콩 신분증 사본.

(4) 대만의 대중매체사업자가 대리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대리신청위탁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大陸地區各主要大衆媒體事業體所屬 關聯專門人士의臺灣參觀訪問申請準則

○民國79年(1990年)7月27日 行政院 新聞局(79)銘秘字 第09756號函

○民國80年(1991年)12月16日 行政院 新聞局(80) 強綜三字 第22347號函
修正

1. 申請資格

대륙인사로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만참관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 (1) 각 주요 뉴스매체사업체 소속의 편집·취재기자 및 중요행정인원과 신문사·잡지사·통신사·방송국·텔레비전 방송의 취재·촬영기자·편집·주필 및 취재에 참여하는 기술과 관련된 엔지니어 및 중요행정인원.
- (2) 출판·영화·텔레비전방송·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공급 등 사업체의 주관급인사.
- (3) 전문적인 조예나 업적이 있는 출판·영화·텔레비전방송사업·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인사.
- (4) 중공의 대중매체사업체의 자유국가 또는 지구에 있는 전문작업인원.

신청인이 전 항의 각 내용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행정원 신문국은 심사소조를 구성하거나 관련인원을 초빙하여 심사한다.

2. 申請方式

(1) 신청인이 자유국가나 지역에 있는 경우는 우리측 주재대사·영사관(기구)에 신청한다. 신청인이 대륙에 있는 경우는 대만의 대중매체사업자가 행정원 신문국에 대리신청한다.

(2) 신청인이 대만에 있는 대중매체사업자에 대리신청을 위탁하는 때에는 반드시 친필서명한 위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위탁서가 없는 경우, 대리제출한 신청은 모두 반송하여 수리하지 아니한다.

3. 행정원 신문국은 필요에 따라 출판·영화·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공급 등의 4종류의 대만참관방문인사에 대해서 그 총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신청인의 방문은 반드시 사전에 대만에 있는 접대기관과 접대사안을 의논하거나 원래 그 신청을 접수한 해외기관이 국내기관에 접대를 연계시키는 것에 협조하며, 상술한 사전안배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5. 商業行爲의 制限

(1) 「현단계 대륙인사의 대만참관방문 신청작업요점」 제

4조 제7항의 「상업행위 종사금지 및 면허·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종사금지」조항은 신청인이 대만체류기간동안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①보수를 받는 행위

②순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

③계약을 맺어 면허·허가증이 필요한 직업적인 공연에 출연하는 행위

④문서·도화를 완성하고 레코드를 취입하고 비디오프로그램촬영·광고, 영화필름을 직접 대만에서 판매 또는 방송·방영하는 행위

(2) 신청인은 대만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시범·참관이나 공익적인 활동의 공연에 종사할 수 있다.

6. 신청인은 대만에 체제하는 기간에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인터뷰를 받을 수 있으며, 전 항에서 규정한 조항과 「현단계 텔레비전방송사업·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의 대륙지구에서의 프로그램제작신청 실시요항」 제5조 방송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그 방송시간을 위에서 서술한 「실시요항」 제8조의 시간횟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신청인은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중화민국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신청시 기재했던 참관방문계획서에서 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위반한 자

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의법처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송환조치한다. 이 경우 국내의 신청기관이나 접대기관의 기타 대만참관방문신청안건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8. 대륙의 신문기구는 대만에 분·지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대만지구의 거주민을 특약기자나 통신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9. 신청인이 입국시 휴대한 대륙지구의 출판물·광고·영화필름·비디오프로그램테이프는 행정원 신문국이 공포 시행하는 「합락지구 출판물·영화필름·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본국 자유지구로의 반입관리요점」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신청인이 입국시에 휴대하는 기타 대륙물품은 재무부(財政部)의 심사결정을 거쳐 세관이 허가를 공고한 입국여행객 휴대반입물품에 한한다.

10. 具備書類의 記載

(1) 參觀 방문계획서

본 계획서는 신청인이 예정하고 있는 대만참관방문의 구상, 개인의 기호·희망(참가하고자 하는 기구·모임 및 대담하고자 하는 인물)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접대기관의 일정안배 참고용으로 된다.

(2) 여행증신청서

흑색이나 청색 펜을 사용하여 한문정자체로 작성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3) 보증서

①보증서는 신청인이 송달하고 현재 대만에 적이 있는
보증인이 친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외국인이
나 화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 또
는 교민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만일 피보증인이 대만에 오기 전에 아직 제3지구의
유효기간 6개월의 비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인
은 보증서를 제출할 때 잠시 기재를 보류할 수 있
다. 다만, 피보증인이 소지한 제3지구의 유효기간 6
개월의 비자는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
며, 입국시 검사에 하자가 없어야 입국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각각의 서식과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상세하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본 준칙의 규
정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
는 때에는 그 책임은 신청인 자신에게 있으며 대리신
청인도 연대책임을 진다.

11. 其他規定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은 참관방문이 주 목적이 되어
야 한다.

(2) 신청인이 방문을 시작하고 마치는 일자 및 그 참관방

문일정은 모두 접대기관이 일정을 총괄하고 적시에 신청인에게 필요한 여행준비를 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2. 본 준칙은 중화민국 80년(1991년)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附註：본 신청준칙은 民國 79년(1990년) 7월27일 행정원 신문국(79)銘秘字 第09756號函에 의해 반포된 「대륙지구 각 주요 대중매체사업체 소속 관련 전문인사의 대만참관방문 신청준칙」을 수정한 것이다.

大陸地區의優秀한民族藝術및民俗技藝人士를 招聘하여臺灣에서傳授하는作業要點

○民國81年(1992年)4月29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陸文字 第1621號函

1. 대륙지구나 해외에서 중요하거나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민족예술 또는 민속기에 종사하면서 탁월한 재능을 구비하고 대만지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인사는 본 요점에 의거하여 대만으로 초빙하여 전수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대만지구의 교육문화기구·전문적인 예술단체가 대륙지구의 우수한 민족예술이나 민속기에인사를 대만에 초빙하여 전수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이하 문건회로 약칭한다)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문건회는 위의 관련기관이나 전문학자들과 초빙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한 후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신청서류를 내무부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약칭한다)에 보내 비준한 여행증을 발급받아 신청기관에 보내 전달한다.
4.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에인사가 대만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단,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기관이 대리로 문건회를 통해 출입국관리국에 그 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1) 전수성과가 양호하여 계속 연장하면 더욱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

(2) 전수계획을 연장하여 새로운 영역의 전수작업을 하려는 자

5.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의 배우자도 대만동반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6.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는 입국시 다음의 증명서류와 귀국비행기(배) 표를 구비해야 하며,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귀국비행기(배) 표가 없는 경우는 원래의 비행기(배)로 송환조치한다.

(1) 대만방문여행증

(2) 제3지구재입국비자(거류증)·대륙여권·홍콩신분증 또는 홍콩·마카오통행증

이상의 모든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7.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가 소지한 제3지구재입국비자(거류증)·대륙여권·홍콩신분증·홍콩마카오통행증은 입국시 출입국관리국 공항사

무소에 제출하여 보관(보관증명수령)하였다가 출국시 회수받는다.

8.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는 입국 후에 유동인구 등기를 해야 하며 대만에의 거주신청을 할 수 없다.
9.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가 국가전시동원시기 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0. 신청기관은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의 배경을 먼저 확실히 인지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대만도착 이후의 안전을 전담해야 한다.
11.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가 대만체류기간중에 법령과 국가안전에 위배되는 일에 종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때에는 의법조치하고 송환한다.
12. 대륙지구의 우수민족예술·민속기예인사와 그 배우자가 대만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중대사고로 인하여 단기출국을 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신청기관이 문건회를 통해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수속을 하며, 출입국관리국은 유효기간 3개월의 출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이 이 기간을 넘겨서도 대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 대만에 다시 오려면 본 요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 신청

하여야 한다.

13. 본 요점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단계 대륙인사의 대만참관방문 신청작업요점과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大陸地區文化財의臺灣地區展覽申請作業要點

○民國81年(1991年)3月12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1) 陸文字 第0977號函

1. 申請要件

(1) 대륙지구에 보존되어 있는 중화골동문물(이하 문화재라 칭한다)이 아래의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로 반입을 신청하여 공개전람을 할 수 있다

- ①역사와 학술가치를 지닌 오래된 문화유물
- ②예술가치를 지니고 있어 감상과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역대의 진귀한 예술품
- ③교육적 의의가 풍부하고 주요역사사건 또는 저명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물
- ④역사·문화가치를 지닌 도서문헌자료
- ⑤중화민족의 사회생활·종교신앙 및 풍속습관을 반영하는 대표적 골동품

(2) 앞 항의 문화재는 문화자산보존법시행세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2. 申請順序

(1) 대만지구의 기관·법인·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대리
로 교육부에 신청한다.

- (2) 교육부는 앞에서 규정한 신청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의한 후 동의서를 발송한다. 이 동의서를 받은 대리신청인은 그 동의서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출입상관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3) 전람허가를 받은 문화재는 전람 및 운송기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具備書類

- (1) 전람계획서
- (2) 초청서류 · 계약서 또는 보증서
- (3) 명세서 : 상세한 물품명 · 연대 · 형상 · 크기 · 숫자 등 항목
- (4) 문화재사진등록부 : 실물사진 및 문자설명
- (5) 문화재보호를 위해 대만에 오는 자의 여행증신청서 영인본
- (6) 대리신청위탁서
- (7) 전람물의 보험서류

4. 滯留期間 및 回數

문화재의 대만전람기간은 매년 한 번 신청하며 매번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및 횟수를 연장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단, 매년의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隨行保護人

- (1) 문화재의 운송·관리·보호 및 해설 등의 일을 협력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륙지구주민은 「현단계 대륙 인사 대만방문 신청작업요점」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문화재와 함께 대만에 올 수 있다.
- (2) 문화재와 함께 대만에 오는 대륙지구주민이 국가비상 총동원시기(動員戡亂時期) 국가안전법시행세칙 제12조 1항에서 4항에 이르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3) 문화재와 함께 대만에 온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체류기간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안전·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의법처리와 함께 송환한다.

6. 代理申請人

- (1) 대만지구의 대리신청인은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등록을 책임지고 상세한 문자설명을 첨가하며, 전람장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 (2) 문화재전람기간에 주관기관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문화재를 이용해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대만반입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7. 文化財의 搬出

문화재를 허가를 거쳐 대만지구에서 전람하는 경우, 대

리신청인은 전람회 종료 2개월내에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반입허가문화재의 명세부와 대조하여 감정한 후 전부를 대만지구에서 반출한다.

V. 財 經 規 定

現段階金融機構의大陸地區 間接送金處理作業要點

○民國80年(1991年)8月20日 行政院 大
陸委員會(80)陸經字 第3114號函

1. 중앙은행은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이하 지정은행이라 부른다)과 체신저축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지정하여 대륙지구의 개인간접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본 요점에서 말하는 간접송금은 지정은행 및 체신저축업무국이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이외의 제3지구은행을 경유하여 대륙지구의 수령인에게 송금액이 전달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제3지구은행에서 대만지구 및 대륙지구은행의 해외분행과 대만지구 또는 대륙지구주민의 투자총액이 50%를 넘는 은행은 제외된다.
3. 중앙은행에서 규정한 「민간송금결제외환매입신청서」의 수령인지구별란에는 대륙지구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지정은행이 만든 「송금신청서」상에도 대륙지구수령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간접송금」임을 밝혀야 한다.
4. 지정은행 및 체신저축업무국의 간접송금처리는 전신환 및 송금수표의 방식으로 한다. 송금수표의 경우에는 수

표상의 지불은행은 제3지구 은행의 제한을 받는다.

5. 지정은행 및 체신저축업무국은 매월 10일전에 지난달의 처리상황(처리건수와 금액 등을 포함)을 중앙은행 및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6. 본 요점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은행이 제정공포한 「민간송금결제방법」의 처리에 따른다.

指定銀行의臺灣地區企業에對한 大陸地區輸出保證金處理作業要點

○民國80年(1991年)11月9日 中央銀行
(80) 臺央外字 第(柒)02264號函

1. 본 요점의 실시대상은 대륙지구와 간접투자 및 간접무역을 하는 국내기업을 포함한다.
2. 기업은 본 보증금처리에 있어 먼저 「대만지구기업의 대륙수출과 대만보증금처리 신고표」를 같은 형식으로 3부 작성해야 한다.
3. 앞 항의 신고표작성에 있어 신고표의 제1항 이번수출과 관련된 상관자료, 목적지국별 및 상품의 물품번호와 금액을 적는다. 이 밖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이미 경제부에 등록을 마쳤거나 수속신고를 마친 기업은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만을 기입하면 된다.
 - (2) 신고를 마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이 표의 제3항과 관련된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합작사업과 관계되는 상관자료를 기입하며, 「三來一補」 및 「기술합작경영방식」에 속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 (3) 대륙지구에 간접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이 표

의 제4항만 기입하면 된다.

4. 신고표의 한 형식으로된 3부의 서류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서류 : ①제3항을 신고한 경우는 합자·독자(獨資)·기술합작·「三來一補」 또는 합작경영 등의 투자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4항을 신고한 경우는 삼각무역 등 기타상업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국제무역국에 송부한다.

(2)두번째 서류 : 수출결제증빙서류의 부속문서가 되며 교역일보(交易日報)와 함께 중앙은행외환국으로 보낸다.

(3) 세번째 서류 : 지정은행이 보관한다.

5. 지정은행의 본 행은 매주 한 차례 신고표를 모아 투자심의위원회 및 국제무역국에 송부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외환관련규정 및 일반수출결제(보증)작업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大陸地區의 間接投資 또는 技術合作에 對한 指導作業要點

○民國 80年(1991年) 8月1日 經濟部
(80) 投審字 第040254號函

1. 대륙지구에서의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기업에 대한 지도의 필요를 위해 본 요점을 제정한다.

2. 指導目的

(1) 대륙지구에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하거나 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이 규정에 의하여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하는 것을 촉진하며, 정부주관기관의 이 부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장악을 강화하여 지도작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대륙지구에서 간접투자 혹은 기술합작을 하는 대만지구사업자를 정합하고 또 협조하여 그 전체적 이익을 쟁취하게 하여 국내경제발전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투자·세무·법률방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순리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한다.

3. 指導小組(小委員會)의 設置

(1) 대륙지구에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하는 기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경제부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경제부 대륙간접투자과 기술합작 지도소조」(이하 지도소조라 부른다)를 구성한다. 그 구성원은 다음의 각 기관에서 파견한다.

- ①행정원 대륙위원회 경제처(이하 陸委會경제처라 약칭한다)
- ②내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국(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이하 출입국관리국이라 약칭한다)
- ③중앙은행 외환국(이하 외환국이라 약칭한다)
- ④재정부 과세청(賦稅署) (이하 賦稅署라 약칭한다)
- ⑤재정부 금융국(이하 금융국이라 약칭한다)
- ⑥재정부 관정국(關政司) (이하 관정국이라 약칭한다)
- ⑦재정부 관세총국(이하 관세총국이라 약칭한다)
- ⑧경제부 국제무역국(이하 國貿局이라 약칭한다)
- ⑨경제부 공업국(이하 공업국이라 약칭한다)
- ⑩경제부 중소기업처(이하 중소기업처라 약칭한다)
- ⑪경제부 투자업무처(이하 투자처라 약칭한다)
- ⑫경제부 상업국(商業司) (이하 상업국이라 약칭한다)
- ⑬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이하 投審會라 약칭한다)
- ⑭해협교류기금회 (이하 海基會라 약칭한다)
- ⑮중화민국 대외무역발전협회 (이하 外貿協會라 약칭한다)

한다)

⑯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 (이하 공업총회라 약칭한다)

⑰중화민국 전국상업총회 (이하 상업총회라 약칭한다)

(2) 전 항의 지도소조는 경제부에서 파견된 소집인 및 집행비서를 각 일인씩 두고 작업성격에 따라 아래의 각조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업무를 협조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①자료서비스조(外貿協會가 주관하고 國貿局·투자처·海基會·공업총회 등이 협조기관이 된다)는 대륙지구 경제무역 서적·간행물·상업정보자료 등을 수집하고 대륙지구경제무역자료의 검색서비스 및 관련 출판물의 발행을 담당하며 外貿協會의 무역자료관인 「대륙자료전용구역」을 개방하여 열람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자문서비스조(투자처가 주관하며 과세청·금융국·공업국·중소기업처·投審會·海基會·양안상무협조회·중국양안공업협회·양안발전기금회·공업총회·상업총회 등이 협조기관이 된다)는 법률·세무 및 행정방면 등의 자문서비스를 담당하며 전문주제별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학자·전문기구 또는 관련단체를 초빙하여 투자경영방면의 지도 및 협조를 제공한다.

③기업체연락조(공업총회와 海基會가 주관하고 공업국

· 상업국 · 外貿協會 · 상업총회 등이 협조기관이 된다)는 관련산업공회(노동조합)와 협조하여 이미 대륙에 진출하여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하고 있는 공회가 입기업 우호연합회 결성을 협조하며 같은 경우의 기업 또는 개인의 지역성우호연합회의 결성을 협조하여 대륙투자와 관련된 좌담회 및 토론회의 개최 및 산업공회의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상품항목의 증가 · 삭제의 허가에 관한 건의를 검토한다.

④종합서비스조(國貿局이 주관하며 출입국관리국 · 외환국 · 과세청 · 금융국 · 관정국(關政司) · 관세총국 · 外貿協會 · 海基會 등이 협조기관이 된다)는 기업이 제3 지구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륙지구를 방문 · 고찰하며 전람회 참가 및 출입국 · 수출입 · 통관 · 검증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데 협조를 하며 양 지구간의 중계무역에 있어서의 예비경보적인 정보의 공포를 담당한다.

⑤행정조(投審會가 주관한다)는 각조간의 연계업무 및 일반문서 · 사무성업무의 처리를 담당한다.

⑥이상의 각 조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관련기관의 참여 ·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4. 指導對象

본 요점의 지도대상은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 대륙에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하거

나 신청신고를 한 대만지구의 사업자 및 이미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대륙지구에 대한 간접투자 또는 기술합작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사업의 전부가 이미 대만지구에서 다른 지구로 전이되거나, 대만지구에서 영업을 중지한 경우는 지도를 하지 아니한다.

“

VI. 交通規定

臺灣地區海外漁業基地에서의漁船船主의 大陸船員雇傭操業管理規定

○民國81年(1992年)2月22日 行政院 農
業委員會(81)農業字 第1104584A號
函

1. 해외기지의 어선선주가 대륙선원을 고용하여 어로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선 및 선원의 해외어업기지 작업관리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해외기지에서 어선선주가 대륙선원의 고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3. 중앙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대륙선원을 고용할 수 없다.
4. 해외기지에서 어선선주가 대륙선원의 고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중앙의 주관기관이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대륙 또는 제3지구의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중앙의 주관기관은 중앙의 노동주관기관과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구역을 확정하며, 성(시)의 주관기관은 구역내어업조합(이하 經辦漁會라 약칭한다)을 지정하여 지도·감독하고 대륙선원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經辦漁會는 전 항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반드시 대륙지구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주관기관과 함께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어선선주는 해외기지에서 대륙선원의 고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어업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어업조합은 당지의 공립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7일내에도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서비스기구의 등록증명서를 근거로 經辦漁會에 대륙선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經辦漁會는 중앙의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구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어선선주가 고용하려는 인선을 제공한다.

7. 해외기지에서 어선선주가 고용하는 대륙선원은 보통선원으로 제한하며, 그 고용인수와 외국국적선원의 총 인원수가 전 선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용된 대륙선원은 해외항구에서 승선하거나 하선해야 하며, 귀항하는 배를 따라 대만지구의 항구에 상륙할 수 없다.

8. 피고용된 대륙선원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만20세 이상의 남자

(2) 심신이 건강하고 불량한 기록이 없는 자

(3) 전문기술 및 선원자격을 갖춘 자

9. 어선선주는 대륙선원고용신청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經辦漁會를 통해 중앙주관 기관 또는 중앙주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비준을 거치는 동시에 신청서를 노동행정주관기관에 송부하여 얻은 심사의견이 비준기관의 허가 및 기각결정이 된다. 계속고용 또는 고용변경도 이와 같다.

(1) 여권 및 선원증

(2) 신체검사증명서(흉부 엑스레이검사·HIV 항체검사· 매독혈청검사 및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포함), 검역증명 및 행위양호증명

(3) 經辦漁會가 공증한 선원노동계약서 副本

(4) 어선에서 조업중인 현직 전체선원명부

(5) 어선의 해외기지출항조업증 영인본

(6) 국내모집증명

經辦漁會 비준을 거쳐 고용된 대륙선원의 경력·신체검사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등의 기본자료를 자료철을 만들어 보존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고용된 대륙선원명부(성명·성별·출생년월일·여권 또는 선원증번호·주소 포함)는 관할 경찰기관 및 당지 노동행정주관기관에도 고지하여야 한다.

10. 대륙선원의 노동조건·대우·보험 및 복지 등에 관해서는 經辦漁會가 관련법령에 의거하고 대만지구선원의 대우기준을 참작하여 어선선주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전 항의 노동조건 등은 반드시 선원노동계약에 명시해야 하며 중앙주관기관에 차례로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1. 어선선장은 대륙선원의 피고용기간 동안의 업무태도·근면성·품성 등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經辦漁會에 송부하여 자료철로 등록한다.

만일 해상조업에 맞지 않거나 품성이 좋지 못한 자를 발견한 경우는 기록에 올려 다시 고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용된 대륙선원이 조업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하선할 경우, 어선선주는 반드시 하선시간·지점 및 원인을 經辦漁會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피고용된 대륙선원의 보수에 있어 어선선주는 소득세를 의법공제납부한다.

3. 어선선주는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륙선원을 고용할 수 없다.

4. 어선선주 또는 선장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업법 및 어선선원관리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그 어선의 선주는 6개월에서 3년까지 대륙선원의 고용이 정지된다.

旅行業에 있어 臺灣地區住民의 大陸地區旅行處理作業要點

○民國81年(1992年)5月5日 交通部 觀光局 觀業(81)字 第08172號函

1. 여행업에 있어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처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요점을 제정한다.
2. 본 요점에서 일컫는 여행업은 대만지구종합·갑종(甲種)여행업을 가리킨다.
3. 본 요점에서 일컫는 여행업은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가서 친지방문·고찰·방문·전시회참가 및 기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여행업이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행객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제3지구에서 접대를 담당하는 여행업명칭·주소·책임자성명·전화번호
 -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가격·보험
 - (3) 기타 협의사항
5. 여행업에 있어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처리의 수속 및 일정안배는 대만지구에서 제3지구까지 일반작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지구에서 대륙지구로의 진입

은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조건에 부합되는 제3지구 여행업에 그 수속·처리를 위탁한다.

- (1) 믿음성이 있고 경영이 양호한 자
- (2) 두 여행업체 이상의 추천을 얻은 자
- (3) 대만지구여행업단체가 현지 여행업단체에 의뢰한 신용조사를 거친 자

6. 여행업은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을 제3지구의 여행업에 위탁하여 그 수속 및 일정을 안배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계약서 부분(副本)을 교통부 관광국에 보내어 비치해 놓아야 한다.

7. 여행업이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에 있어 단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매 여행객이 적어도 신대만화 이백만원의 意外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별여행객이 대륙지구여행을 위탁수속하는 때에는 여행업은 대리수속 이전에 반드시 전 항의 보험을 고지하여야 하며 여행객이 이에 대해 대리수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탁여행업은 대리수속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여행객이 부담한다.

8. 여행업이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처리에 있어 단체를 구성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여행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상황설명을 해

주어야 하며 인솔자를 파견하여 전 일정을 단체와 함께 행동하면서 서비스해야 한다.

전 항의 인솔자는 반드시 교통부 관광국의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대륙지구인솔자조업증을 발급받아야만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 여행업이 파견한 인솔자는 대륙지구체류기간에 있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거나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10. 여행업은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처리에 있어 대륙지구에서 긴급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관광국이 제정공포한 관련작업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여행업 및 파견된 인솔자가 본 요점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광발전조례 또는 기타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VII. 附 錄

行政院各機關의 國家統一 綱領短期段階計劃實行摘要表

○民國81年(1992年)1月20日 院長 制定

類別	計 劃 名 稱	主管機關
1. 綜合	1. 대륙공작정보체계의 전반적 기획	陸委會 研考會
	2. 국가통일강령의 선전강화 계획	陸委會
2. 文教	1. 양 지구 文化資産의 보존과 발양의 강화	文建會
	2. 민족예술의 전승과 발양의 강화	文建會
	3. 두 지구 문자통일 작업연구의 추진	文建會 教育部

文教	4. 양 지구의 학생·학자 및 사회 청년교류의 강화	教育部 靑輔會
	5. 양 지구 학술·과학기술교류의 강화	國科會
	6. 양 지구 대중전파매체의 교류 확대	新聞局
	7. 문화출판사업의 대륙간접투자 개방 연구	新聞局 內務部
	8. 양 지구 국민체육교류 강화	教育部
	9. 양 지구 종교교류의 추진	內務部
	10. 몽고·서장문제연구 추진	蒙藏委員會

文教	11.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와 교류 추진	內務部
3. 經濟	1. 양 지구의 농업발전 및 기술교 류계획	農業委員會
	2. 양 지구의 환경보호업무와 교 육 및 기술교류계획의 추진	環境廳
	3. 양 지구의 지혜산업권보장계획 추진	經濟部 內務部
	4. 중국대륙연구 개발계획	經濟部
	5. 서비스업종의 대륙지구 간접투 자 가능성 연구	大陸委員會 經濟部 財政部
	6. 대륙지구의 간접투자기업 지도 계획	經濟部

經濟	7. 양 지구 경제교류관련법규의 검토와 수정	經濟部
	8. 양 지구 경제활동의 투자보장 및 경제·무역분규조정제도 건립	經濟部 農業委員會 大陸委員會
	9.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여행에 있어서의 안전 및 권익보장 계획	交通部 大陸委員會
	10. 대륙지구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수입하는 계획의 연구	勞動委員會 農業委員會
	11. 양 지구주민왕래 및 경제활동의 조세문제연구	財政部
	12. 양 지구 간접통항실시 계획의 관철	交通部
	13. 對 대륙여행처리업자 및 인솔자 훈련강화계획	交通部

經濟	14. 양 지구 경제·무역 상호영향 예비경보제도 건립	經濟部
	15. 양 지구 핵 폐기 공동처리 연 구계획	原委會
4. 法律	1. 양 지구 범죄의 공동방제	內務部
	2. 양 지구 사회복지사업경험의 교류추진	內務部
	3. 양 지구 선거경험의 교류촉진	內務部
	4. 양 지구 농지개혁경험의 교류 촉진	內務部
	5. 양 지구 주민관계관련규정의 적시연구 및 제정을 통한 양 지 구 주민왕래교류질서의 확립	內務部 陸委會

法律	6. 민간단체의 양 지구 교류활동 추진 지도	內務部 陸委會
	7. 양 지구의 문서경험 및 분규처리 모델의 건립추진	陸委會
	8. 양 지구의 민간 의약위생 교류 추진	衛生署
	9. 양 지구의 법률사무교류 강화	法務部
	10. 대륙지구에 가는 퇴역군인· 퇴직공무원·퇴직교원의 노후서 비스 강화	退輔會 人事行政局

海峽兩岸關係協會定款

○1991年 12月 16日 通過

第 1 章 總 則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해협양안관계협회라 정하며 사회
단체법인이다.

제 2 조 본회는 해협양안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양안관계
를 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함을 주지로 한다.

제 3 조 전항의 주지를 실현하기 위해 본회는 다음 사항
에 역점을 둔다.

1. 본회의 주지에 찬성하는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2. 해협양안간의 각종 교류와 왕래를 촉진시키는 관련분
야에 협조한다.
3. 해협양안간의 동포왕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
는 관련분야에 협조하여 양안동포의 정당한 권익을 보
호한다.

제 4 조 본회는 대만관련부문 및 수권단체·인사와 해협양
안 왕래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관련부문의 위탁을

접수하며 협의성 문서에 조인할 수 있다.

제 5 조 본회의 소재지는 북경에 둔다.

第 2 章 機構組織

제 6 조 본회의 최고권력기구는 이사회가 된다. 이사회
의사는 사회각계와 관련부문의 추천·협상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본회는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비서장 1인을 둔다.

본회는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본회는 고문을 추대한다.

제 8 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심의년도의
회무보고, 정관수정, 경비의 예산·결산심의, 회장·상임부
회장·부회장 추천, 명예회장 추대, 고문초빙, 이사임면의
결정, 회장이 지명한 비서장 인선의 결정

제 9 조 이사회는 매년 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행한다.
회장·상임부회장의 필요 또는 3분의 1이상 이사의 제의
를 거쳐 임시 이사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다수이
사의 동의를 거쳐 통과한다.

제11조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비서장으로 상무이사회
를 구성하여 이사회 상설집행기구로 한다.

상무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추천심의 제청, 고문초빙 및 비서장이 지명한 부비서장 인선의 결정

제12조 회장은 본회 업무를 영도한다.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상임부회장은 본회의 일상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는 본회 상무이사회의 수권을 받아 본회가 처리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업무를 대표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第 3 章 經 費

제15조 본회의 경비조달은 민간찬조와 기부·국가보조 및 자본용역서비스 등의 기타 합법수입에 의한다.

제16조 본회의 수입·지출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第 4 章 附 則

제17조 본회의 해산은 반드시 의법처리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 전체회의 통과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수정한다. 이사회 전체

회의의 정관수정은 4분의 3 이상의 이사출석과 출석이사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본회의 정관은 상무이사회가 해석권을 갖는다.

“

吳學謙副總理의海峽兩岸關係協會創立大會演說文

○1991年 12月 16日

동지 여러분, 각계인사 여러분!

해협양안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양안관계를 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주지로 하는 민간단체인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오늘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최근 양안동포들의 공동노력아래 양안간의 경제·문화등 교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포상호간의 교류와 연계도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국내외의 많은 단체와 인사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협회의 성립은 양안간의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진일보 발전시킬 것입니다.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의 순리적인 진행을 위해 관련기관은 장차 이 협회에게 대만과 관련된 수권단체·인사와 양안교류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처리하는 권한을 줄 것입니다. 본인은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모든 조국의 평화통일대업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의 힘을 모아

하루속히 양안간의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간의 교류를 실현하여 양안간의 왕래를 확대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1991년 6월 7일 중국공산당의 대대만 사무책임자의 담화에서도 명백히 제기되었듯이 해협양안의 쌍방관련부문들은 하루속히 직접적인 삼통(三通)과 쌍방교류문제를 실현하여 왕래를 확대하고 연계를 긴밀하게 하여 민족경제를 번영시켜 양안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여야 합니다.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준비와 창립은 바로 앞의 건의를 실행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대만당국과 각계의 지식인사들이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성립에 선의의 대응과 적극적인 시책을 실시하여 각종의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양안관계의 발전이 더욱 빠르고 순리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현재, 대만내에는 ‘대독’(臺獨, 대만독립주의자)이 국가와 민족의 분열을 획책하는 위험한 기도를 함으로써 대만내의 각계인사·민중과 여론의 힐책과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역사의 조류에 역행하여 민심을 얻을 수 없는 일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독세력의 분열책동은 중국의 통일대업을 위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만내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당 당국에게도 불리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에도 더욱 불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독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해협쌍방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양안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통한 양안의 왕래와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만 당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최근 보다 실질적인 활동으로 해협양안간의 관계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양안관계·인적교류의 확대 및 점진적인 직접 우편왕래·운항을 개방하고 대독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반대표명등을 하는데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명철한 양안동포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더욱 실질적인 조치들로 양안관계를 가속화하여 하루 속히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는 조국의 평화통일대업을 추진하고 중국을 진흥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평화적 통일 및 일국양제의 방침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모든 양안관계의 발전을 찬성하고 옹호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각 당파·단체와 인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협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해협 양안 및 국내외의 모든 애국동포들이 단결하여 분투한다면 조국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王兆國主任의海峽兩岸關係協會創立大會演說文

○1991年 12月 16日

동지 여러분, 각계인사 여러분!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오늘 창립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해협양안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이즈음에 협회의 성립은 장차 양안 각 방면의 교류와 왕래를 확대·추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중공중앙 대만공작사무실(대만공작판공실) 및 국무원 대만업무사무실(대만사무판공실)을 대표하여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성립에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협회의 정관에 조국의 평화통일에 찬성하는 사회단체·각계인사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안 각 방면의 왕래와 교류를 촉진하고 양안동포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노력한다는 조항에 매우 기쁨을 느낍니다. 희망컨대 협회는 각 방면의 커다란 지지아래 양안간의 민간교류확대 및 양안동포의 소통과 이해의 증진, 그리고 양안관계의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국무원 대만업무사무실은 장차 양안관계발전의 실제필요에 근거하여 해

협양안관계협회에 대만관련부문 수권단체·인사의 해협양안 교류중의 관련문제상담과 협의성 문서의 계약체결까지도 위탁할 것입니다.

일년간,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영도아래, 평화통일·일국양제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일련의 중요한 정책등을 채택하였습니다. 6월 7일, 중공중앙의 대만공작사무실(대만공작판공실)의 책임자가 양안관계발전을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3가지의 중요한 책임있는 건의를 하였고, 4월에는 대만의 관련부문에 양안교류중의 구체적인 문제의 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5항의 원칙을 제기한 바 있으며, 7월 21일에는 양안의 관련부문들이 협력하여 대만해협에서의 밀무역·약탈범죄 등을 척결하는 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자는 건의를 하였으며, 11월에는 쌍방이 북경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절차성 협상을 거행하여 진취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들어 양안동포의 공동노력하에 양안간의 왕래와 교류는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양안의 홍콩을 거치는 중개무역액이 40.37억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3.4%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대만상인의 대대륙 투자협의 액수도 계속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7.42%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1

~11월 사이에 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이 90만에 달해 전년 동기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만의 운동선수가 대륙지구 에 와서 체육교류를 진행한 단체도 101차 2,000여명에 달 했습니다. 또 대만의 원주민 체육대표단은 11월에 광서에서 거행된 제4회 전국 소수민족운동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의 대학원 사생도 연2,000여명이 단체를 조직하여 방문하고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백여명의 해협양안지구와 해외의 학자들이 북경에서 제 1차 ‘양안관계연토회’를 거행하였으며, 추석에는 200여명의 대만청년들이 단체로 북경을 방문하여 대규모의 ‘해협양안 청년교류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양안교류의 확대와 양안관계의 발전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대만동포와 대만당국의 약간의 인사 및 각계 지식인들이 양안간의 우편·운항·통상의 직접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더욱 밀접하고 확대된 양안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민의에 순응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을 채택해서 속히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하루 빨리 해협양안 간에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간의 교류가 실현되고 양안 각 방면의 교류가 확대되어 양안관계가 보다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해, 올해의 양안관계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양안교류가 기본적으로는 단편적인, 즉 양안의 민중들이 고대하는 직접적인 삼통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 점은 금년에 대만해협에서 대륙의 어민이 대만군·경찰에 구타·억류·총격을 받은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여 심각한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양안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대륙동포의 감정에도 장애를 입혔습니다. 대만당국은 유효적절한 조치로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기간동안 '대독'의 활동이 기승을 부려 대만 내의 안정을 해치고 양안동포 및 홍콩·마카오지구의 동포 그리고 국외 화교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찬동하는 대만의 각당파·단체 및 인사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대독'을 척결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조국의 평화통일과업은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전체 중국인이 애국주의의 위대한 기치아래 단결하여 민족이익과 국가전도를 중히 여기고 공동으로 분투 노력한다면 조국평화통일이라는 오랜 숙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蔡子民顧問의海峽兩岸關係協會創立大會祝辭

○1991年 12月 16日

신사·숙녀·귀빈 여러분!

오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본인과 여러분 및 국내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과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두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본인은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중국평화통일촉진회, 그리고 대만민주자치동맹을 대표하여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창립을 충심으로 축하하고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업무가 순리적으로 발전되길 축원하며 양안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통일과업의 추진을 위해 공헌하길 바랍니다.

1979년 이래 해협양안의 동포·각당파·단체·인사 및 해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진력하는 모든 중국인들의 공동 노력아래 양안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양안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추세에서 양안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주지로 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창립은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장차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안관계의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심껏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협력단결하는 민간단체·조직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해협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부문들의 양안교류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의 적절한 해결에 협조하여 양안동포의 정당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양안간의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교류를 촉진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단결하고 협력하면 반드시 해협양안간의 교류가 가일층 확대될 것이며 동포간의 상호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양안관계발전에 진취적인 공헌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국통일·진흥중화’는 대만동포, 홍콩·마카오동포와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중국인들의 숭고한 희망이며 신성한 사명입니다. 조국의 평화통일과업은 현재 9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내의 조국통일을 찬성하는 모든 당파·단체 및 각계 인사와 공동으로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실현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민족의 대의와 조국의 전도를 우선하고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며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 정말로 양안동포의 권익에 부합되고 양안관계의 발전과

국가의 통일에 유리한 시책을 펼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립대회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해협 양안관계협회의 사업에도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榮毅仁名譽會長의海峽兩岸關係協會 創立大會招請會演說

○1991年 12月 16日

신사·숙녀·내외빈 여러분!

오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근래, 해협양안간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단절·상호불왕래의 상황이 이미 변화하고 양안간의 각종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안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양안동포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는 양안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대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양안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함을 주지로 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창립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본인은 새로 창립한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장차 민간단체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안의 각 사회단체 및 인사와의 접촉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세워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으로 양안간의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교류를 속히 실현하고 양안관계를 진일보 발전 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또 본인은 진실하고 성실한 교류정신이 바탕이 된다면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양안의 각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며, 양안교류의 전망도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통일·민족진흥은 양안동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사입니다. 오늘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에 의해 해협양안관계협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본인은 각계의 인사와 공동으로 양안관계를 증진하고 빠른 시일안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汪道涵會長의海峽兩岸關係協會 創立大會招請會演說

○1991年 12月 16日

내외 귀빈 여러분!

각 관련부문의 지지와 협조아래, 오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순조롭고 원만하게 창립되었습니다. 본인도 이 자리의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해협양안관계협회를 대표하여 모든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협회는 상공·문화·과학기술·교육 등의 각계인사와 전문가·학자를 망라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민간단체입니다. 이는 양안간의 민족적인 소통과 협력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양안관계의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안간의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교류를 하루 속히 실현하는 것과 양안교류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안동포의 절박한 요구인 것입니다.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새로 창립된 민간단체로서 정관에 규정된 주지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일국양제'의 방침에 의거 관계부문과 단체·인사와 양안관계를 촉

진하고 양안민중의 정당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것입니다.

근년동안, 국내외의 많은 단체와 인사가 양안관계의 발전추진에 진취적인 공헌을 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국내외의 조국평화통일을 옹호하는 각 사회단체·인사와 상호존중의 기초아래 상호간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양안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조속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공헌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희망으로 총만한 90년대에 조국의 평화통일·중화의 진흥을 위한 양안동포의 공동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唐樹備常務副會長의海峽兩岸關係協會 近期業務構想

○1991年 12月 16日

금후 일정기간동안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아래의 몇 부문
업무실현에 중점을 둔다.

1. 業務連繫의 樹立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점진적으로 대만내·외의 민간단체·
인사와 연계 및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민간역량을 발
휘시켜 양안의 직접적인 삼통과 쌍방교류를 공동으로 촉진
한다.

국무원 대만업무사무실(대만사무판공실)의 권한을 받아
해협양안관계협회는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및 관련단체와의
연계진행을 책임지고 상관문제를 처리한다.

2. 臺灣海峽에서의 密交易·掠奪問題 剔抉을 위한 臺灣授 權團體와의 協商進行 準備

국무원 대만업무사무실(대만사무판공실)의 책임관리는
이미 대만해협교류기금회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에

서 정식으로 협상중에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협상의 제목·기관·순서·시간 등의 문제에 관해 여러항의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는 아직 더 협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기관은 국무원의 대만업무사업처의 위탁을 받아 해협양안관계협회가 맡는다. 따라서 본회는 협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한다.

양안해상에서의 어업분규와 관련된 문제 및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 지구에 진입한 주민과 관련된 문제는 국무원 대만업무사업실 책임관리가 1991년 11월에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진장문선생과 협상할 때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이 두 문제를 전문협상문제로 규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재 대륙의 관련부문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해협양안관계협회는 관련부문과 협조하여 대만수권단체 혹은 인사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3. 諮問用役·서비스 提供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적극적으로 대만내·외의 각 단체·각계인사에게 대륙투자·무역 및 기타 교류활동에 관련된 정책·법규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륙의 관계부문과 지방에 대만의 문화·학술·체육·과학기술교류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本會의 組織建設 強化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장차 점진적으로 내부규정·제도를 완벽히 하고 직책을 명확히 한다. 또한 업무의 발전에 따라 업무인원도 적당히 증가시키고 중앙·국무원의 각 부문 및 각 사회단체 그리고 각지와 연계를 수립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5. 持續的인 資金募金

정관에 의거하여 본회의 경비는 국가보조·민간찬조와 기부 등으로 조달한다. 현재까지 본회에는 회사·기업이 제공한 찬조금을 포함하여 약간의 자금이 있다. 본회는 앞으로도 계속 양안관계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륙·대만 및 해외의 각 단체·인사의 조건없는 찬조와 기부를 접수하여 본회의 각항 사업전개에 이용한다.